

정조대 춘·추도기 운영 연구*

정지연**

《요약》

본고는 정조대 춘·추도기 규정과 운영 과정을 검토함으로써 춘·추도기의 특징을 파악하고자 했다.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춘·추도기는 정조 즉위년에 시작된 성균관 과시로, 전강과 제술을 봄과 가을의 어느 날에 병설하고 유생들이 자원으로 선택하여 응시하도록 했다. 춘도기는 대개 1-2월에, 추도기는 대개 7-8월에 시행했고, 시행일 1-2일 전에 명령일 당일의 석식당 도기나 다음날의 조식당 도기를 가져오게 하는 방식으로 도기 수취를 예고하곤 했다. 정조대 후반에는 장기간의 식당 도기를 가져오게 하여, 보다 많은 생원 진사가 춘·추도기에 응시할 수 있도록 했다.

춘·추도기 전강과 제술의 시관은 각각 7명이었다. 기본 응시자는 도기명부에 이름이 있는 생원·진사와, 성균관 하재 및 사학(四學)의 유학이었다. 정조6년(1782)부터는 사학 재임도 성균관 재임과 마찬가지로 춘·추도기에 응시할 수 있도록 했다. 응시자 수는, 장기간의 도기를 수취하거나, 성균관의 생원·진사 식당 수 제한이 없는 시기에 시행하는 경우는, 수백 명 이상으로 늘기도 했다.

춘·추도기의 전강 경서는 삼경 중 왕이 낙점한 일경이었다. 정조는 삼경 중 『시전』과 『서전』을 주로 낙점했다. 전강은 최고 성적이 여러 명인 경우는, 다른 경서를 응강하게 하여 최우수자 1명을 가렸다. 제술에서는 일반적으로 비교가 없었으며, 변별력이 있는 문체로 여겨졌던 표(表)·책(策)·전(箋)을 어제(御題)로 출제하곤 했다.

춘·추도기의 최고은사는 전강과 제술 각각 1명에게 직부전시를 내리는 것이 법규로, 정조대 내내 이 기조는 유지되었다. 전체 은사자 수는 전강이 제술보다 많았지만, 직부전시자만은 제술이 전강보다 많았다. 은사자들의 구성은 직분의 차이가

* 본고는 필자의 박사학위논문(『숙종-정조대 성균관 과시(課試) 운영 연구』, 서울대학교대학원)의 일부 내용을 토대로 수정, 보완한 연구임.

** 서울난곡초등학교 교사

두드러져서, 생원·진사는 제술에, 유학은 전강에 능한 면모를 보였다. 정조대 춘·추도기 전강과 제술 은사자들의 직분 차이는, 이전 시기부터 이어져 온 경향성이었다. 정조는 재위 내내 춘·추도기에 대해 전강과 제술 각각에 능한 유생을 선발하는 기능을 유지하게 했다.

【주제어】 춘추도기(春秋到記), 도기전강(到記殿講), 도기제술(到記製述), 과시(課試), 정조(正祖)

I. 서론

정조대(1776-1800) 편찬된 『대전통편』(1785, 정조9)의 과시(課試) 편제(編制)는 『속대전』(1746, 영조22)과 비교하여 전강(殿講) 조에 춘·추도기가 추가되는 변화가 나타난다.¹⁾ 『속대전』의 전강은 짝수 달의 정일(定日)에 시행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지만 영조는 불시에 시행하는 전강을 선호하여, 영조대부터는 전자를 일차전강(日次殿講) 후자를 도기전강(到記殿講)을 구분하여 지칭했다.²⁾ 『대전통편』에 춘·추도기가 추가된 이후 고종대(1863-1907) 『대전회통』(1865, 고종2)은 과시 편제의 변화 없이,³⁾ 정조대의 과시 운영 규정을 명문화했다.⁴⁾

『대전통편』에 추가된 춘·추도기는 성균관의 대과 관련 과시로, 그 연원은 영조대의 도기전강과 영조19-35년(1743-1759)동안 주요하게 시행된 후 영조 42년(1766)부터 재위 말까지 간헐적으로 시행되었던 도기분제강(到記分製講)이다.⁵⁾ 도기분제강은 영조대 처음 시행할 때는 춘·추라는 시기의 지정 없이, 도기전강과 마찬가지로 불시에 성균관의 식당명부인 도기(到記)를 가져오게 하고 거기에 이름이 있는 유생들을 자원에 따라 각각 전강과 제술에 응시하게 하고 은사를 내리는 과시였다. 도기분제

1) 『續大典』 「禮典」 諸科, 【殿講】 【額數】 無元定數 【講書】 三經 <臨時稟旨> 館·學到記儒生自二月間一朔 每十六日 稟旨舉行 或親臨考講 <考官同式年文科殿試 純通直赴會試 粗以上給分親臨則純通或直赴殿試 純通過多則製述比較以取 毋過三人 有特旨乃行 『大典通編』 春秋到記分製講 則居首一人 各賜第 雖命官設行 亦賜第>.

2) 정지연(2018b), 「정조대 일차유생전강 운영 규정 변화 연구」, 『한국교육사학』 40권 3호, p.168.

3) 『대전회통』의 과시 편제는 『대전통편』과 동일하나, 운영에 관한 보충 설명에서는 『대전통편』 편찬 이후의 과시 운영의 변화가 반영되어 있다.

4) 최광만(2018), 「조선 후기 과시 규정의 변화」, 『교육사학연구』 28집 1호, 교육사학회, p.87.

5) 정지연(2018a), 「숙종-정조대 성균관 과시(課試) 운영 연구」, 서울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p.111 ‘<표 IV-10> 영조대 시기별 도기유생 및 원점유생에 대한 과시 시행 횟수’ 참고.

강은 『속대전』 편찬 시기보다 2-3년 먼저 시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과시들과 달리 제과(諸科) 조에 규정이 수록되지 않았는데, 이것은 편집 작업이 이미 진행된 와중에 해당 과시의 규정이 변했기 때문으로 짐작된다. 『속대전』 과시 법규와 실제 운영의 차이는 전강의 비교도 마찬가지여서, 『속대전』에서는 전강에서 순통자가 많을 경우 제술로 우수자를 가린다고 하였지만,⁶⁾ 영조19-35년 동안 도기전강이나 일차전강의 순통자 비교방식은 다른 경서에 대한 강서였다.⁷⁾

영조대 도기분제강은 도기전강을 중시했던 영조의 정책에 기반하여 시작되었다. 영조는 도기전강을 통해 전강의 결행을 줄이고 보다 많은 유생의 성균관 거재를 도모했고, 이러한 정책의 연장선에서 영조19-35년(1743-1759) 동안 도기분제강을 실시했다. 이 때문에 기존연구에서는 영조대 도기전강에 주목하여 정조대 춘·추도기는 해당 연구에서 간략하게 다루거나,⁸⁾ 정조대 문과 혹은 과시 연구에서 성균관 과시의 하나로 춘·추도기를 다루었다.⁹⁾

춘·추도기는 정조 즉위 후 가장 처음 시행한 성균관 과시다. 『대전통편』과 같은 시기에 편찬된 『태학지』(1785, 정조9)에는 8권 「선거(選舉)」에 도기(到記)를 전강(殿講)과 별도로 편제(編制)하고, 법규 및 기원과 운영 상황을 수록하고 있다. 이것은 정조대 춘·추도기가, 전강의 일부가 아닌, 다른 성균관 과시와 마찬가지로 하나의 독립된 과시로 운영되었음을 알려준다. 또한 정조대 다른 성균관 과시가 오롯이 제술 시험-절일제 및 황감제-이거나 강서 시험-일차전강-이었고, 일차전강은 상재생응제가 병설되는 와중에 시기에 따라 은사등급의 변화가 있었던 반면,¹⁰⁾ 춘·추도기는 일반적으로 제술과 강서 시험을 병행하고 최고은사의 수준도 변화가 없던 과시다. 그 점에서 정조대 춘·추도기는 다른 성균관 과시 운영에 천착할 때 비교의 기준이 될 수 있는 과시다.

이에 본고는 정조대 성립된 춘·추도기의 운영 법규와 규정, 그 운영의 실체를 검토함으로써, 춘·추도기 운영의 특징을 파악하고자 한다. 나아가 이를 통해 정조대 성균관 과시 운영의 일면을 드러내고자 한다.

6) 각주1 참고.

7) 정지연(2018a)의 앞 글, pp. 84-85.

8) 박현순(2013b), 「영조대 到記儒生殿講에 관한 고찰」, 『한국문화』 64,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9) 박현순(2013a), 「正祖代 科擧制 운영의 정비」, 『한국문화』 62,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최광만(2015), 「정조 대의 성균관 과시 정책」, 『한국교육사학』 37권 4호, 한국교육사학회.

10) 정지연(2018b)의 앞 글, pp. 182-185.

II. 정조대 춘·추도기 운영의 실제

이 장에서는 정조대 춘·추도기 운영 상황을 검토한다. 먼저 춘·추도기 운영의 기본이 되는 법규와 규정을 살펴보고, 이어서 편년자료의 기록을 바탕으로 춘·추도기의 시행절차를 검토한다. 이를 바탕으로 정조대 춘·추도기 운영의 특징을 파악한다.

1. 운영 법규 및 규정

정조대 춘·추도기 운영 법규와 규정은 『대전통편』과 『태학지』를 통해 파악할 수 있다. 『대전통편』과 『태학지』에 기록된 춘·추도기 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다.

『대전통편』 【전강】 … 봄과 가을의 도기유생에 대한 분제강(分製講)에서는 거수 1인에게 급제를 내린다. 명관(命官)이 설행하는 경우에도 급제를 내린다.¹¹⁾

『태학지』 【도기】 무릇 성균관과 사학의 식당 도기를, 특지(特旨)에 의해 거두어 입계(入啓)하고, 강서와 제술로 나눠서 선발한다. 입격인은 사제(賜第) 혹은 급분(給分)으로 시상한다.¹²⁾

『대전통편』의 춘·추도기 법규는, 시행 시기가 봄과 가을이며 그 은사는 거수1인의 사제(賜第), 즉 직부전시라는 점을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다. 앞서 『속대전』의 전강 은사는 친림의 경우만 직부전시의 은사를 내리며 그 인원수는 최대 3명이었다. 반면 『대전통편』의 춘·추도기 은사는, 친림이 아니고 명관이 시행하더라도 최우수자에게 직부전시의 은사를 내리되 그 인원수는 강서와 제술 각각 1명으로 한정하고 있다.

『태학지』에서는 춘·추도기의 시기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도기유생이 성균관과 사학의 유생이라는 것과, 도기를 수취하는 것은 특명에 의한 것이며, 은사는 직부전시부터 급분까지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태학지』는 춘·추도기 규정에 이어서 조선조의 도기에 의한 시험을 기록하고 있는데,¹³⁾ 그 중 정조대 기사는 총 3가지로 춘·추

11) 『大典通編』 「禮典」 諸科, 【殿講】 … 春·秋到記分製講 則居首一人 各賜第 雖命官設行 亦賜第.

12) 『太學志』 卷之八 「選舉」 到記, 凡館學儒生食堂到記 有特旨收聚以入 分製講試取 入格人或賜第 或給分施賞.

13) 『태학지』 도기(到記) 항목은 중종20년(1525)부터 기록되어 있으나, 이것은 도기를 바탕으로 시행한 시험들이라는 의미에서 포함시킨 것으로, 전강에서 분화된 춘·추도기에 관한 내용은 아니다.(최광만(2018)의 앞 글, p.105, 각주45)

도기 시행과 관련된 것이다. 첫 번째 기사는 정조4년(1780) 8월의 추도기제술에 관한 기사로, 1년동안 성균관 원점(圓點)¹⁴⁾ 30점을 채운 준점유생은 도기에 상관없이 응시하도록 한 것을 기록하고 있다.¹⁵⁾ 두 번째 기사는 정조5년(1781) 7월에 정조가 내린 하교로, 정조가 춘·추도기의 시행에서 이미 시행된 도기를 수취하던 전례와 달리, 앞날의 도기 수취를 예고하기도 하였음을 알려주고 있다.¹⁶⁾ 세 번째 기사는 정조6년(1782) 1월 춘도기 때에 내려진 하교로,¹⁷⁾ 사학(四學) 재임(齎任)도 성균관 재임과 마찬가지로, 춘·추도기에 사학 유생들을 이끌고 오며 도기에 이름이 없어도 특교에 따라 응시할 수 있게 한 내용이다.¹⁸⁾

이상 『대전통편』의 법규와 『대학지』의 규정 및 기사는, 정조대 춘·추도기의 수취(收取) 도기, 응시자 등에 변화가 있었음을 알려준다. 이를 바탕으로 다음 절에서는 춘·추도기의 시행절차를 살펴본다.

2. 춘·추도기 시행절차

춘·추도기는 정조대부터 시행되었지만, 그 용어는 영조43년(1767)에 도기전강과 관련하여 처음 언급되었고,¹⁹⁾ 영조46년(1770) 1월 8일의 성균관 과시의 은사를 조정하는 하교에서 보다 의미있게 언급되었다.²⁰⁾ 6개월 후인 영조46년 7월 6일에 발표된

-
- 14) 원점(圓點)은 성균관 생원·진사의 식당 참여와 관련한 용어로, 성균관 식당에서 아침식사와 저녁식사를 한 뒤 장부[도기]에 점을 찍는 것을 원점1점으로 계산했다.; 『經國大典』 「禮典」 諸科, 居齋儒生圓點 赴食堂兩時 爲一點 泮製則準五十點 館試則準三百點者 許赴 ….
- 15) 『太學志』 卷之八 「選舉」 到記, 當宁四年庚子 上以圓點復設後 無別設之科 無以簞動多士 命□秋到記儒生製述時 已準點未參食堂儒生 一體應試; 『承政院日記』 정조 4년(1780) 8월 2일 무신, 以備忘記 傳于李致中曰 圓點復設後 無別設之科 雖出於罕設之意 其爲蔑效於簞動作典 亦可知矣 明日到記儒生製述時 圓點儒生中 已準點未參夕食堂人 一體應試.
- 16) 『太學志』 卷之八 「選舉」 到記, (當宁)五年辛丑七月 教曰 近年以來 罕設科舉 以春秋到記 必分製講 各取一人 又於收到記之時, 不收已食堂之學案 先以將收之意知委者, 非不知差違古例, 而蓋從闊狹之意也 諸生不體此意 常時居泮 不但絕罕 并與春秋到記之月 而食堂之數 多不過數十人 弛張之舉 反爲僥倖之歸 予所以爲諸生慨也 令大司成 布諭諸生 俾爲勤勵.
- 17) 『正祖實錄』 정조 6년(1782) 1월 10일 정미, 丁未 御春塘臺 科次到記儒生試券 比較試講儒生 … 教曰 館學無異 此後春秋到記 學儒·齎任 一體押班應試.
- 18) 『太學志』 卷之八 「選舉」 到記, (當宁)六年壬寅 始命四學齎任許赴到記科 上深科舉頻數之弊 臨御以來設科甚罕 既又以軫到記之 只取生進而幼學無以觀光 特令四學掌議色掌依太學掌議色掌例 春秋到記同爲押班 開赴學之露著爲式.
- 19) 『承政院日記』 영조 43년(1767) 윤7월 15일 병오, 丁亥閏七月十五日辰時, 上御集慶堂. 都承旨入侍時 行都承旨金鍾正 假注書鄭履玉 記注官朴宗彦 記事官姜翰 以次進伏訖 上命承旨書之曰 噫 年益衰氣益茶 追慕昔年之心 欲述昔年之意 交切于中 昔年仰觀 春秋到記儒生 每年不踰 到記儒生 賜第 勸獎深遠 何則 ….

「경인정식(庚寅定式)」에는, ‘춘·추도기 전강은 친림으로 시행하든 명관으로 시행하든 직부전시의 은사를 내리되, 거수가 많으면 구례에 따라 비교하여 1인을 넘지 않는다.’는 규정이 실려 있다.²¹⁾ 정식 발표 후 영조47년(1771)에는 이 정식에 따라 춘도기 전강과 추도기 전강을 시행했다.²²⁾ 영조48년(1772) 1월 2일의 도기전강도, 명관의 주관 아래 순통자 5명을 비교하여 1명에게 직부전시를 내린 것으로 보아, 경인정식에 의한 춘도기 전강으로 짐작되지만,²³⁾ 이 외 영조48년에 도기전강의 기록은 없다. 또한 이후 영조 재위 말까지 춘·추라는 시기를 고려한 도기에 의한 과시 시행은 찾아보기 어렵다.

정조대 춘·추도기는, 이상의 영조대 말의 춘·추라는 도기전강 시기, 그리고 영조대 내내 시행되었던 도기전강 및 일정기간 동안 시행되었던 도기분제강 규정을 정비하여 정조즉위년부터 시행되었다. 정조대 춘·추도기는, 정조즉위년(1776)-24년(1800) 동안, 정조즉위년 8월의 추도기부터 정조24년 3월의 춘도기에 이르기까지, 춘도기와 추도기 모두 결행없이 각각 24회 총 48회 시행되었다.

이 절에서는 먼저 정조대 춘·추도기가 처음 시행되었던 정조즉위년(1776) 8월 추도기 시행과정을 살펴본다. 이어서 정조대 춘·추도기 시행 전반(全般)을 시행시기 및 수취 도기, 시관 및 응시자, 시험 과목, 은사로 나누어 검토한다.

20) 『承政院日記』 영조 46년(1770) 1월 8일 병술, 備忘記 … 其問直赴帖者甚多 故徐判府事之奏 今南泰濟之言 悅然覺矣 今後大科外 凡於節製 依古例以直赴會試舉行 日次殿講 亦依此例爲之 只春秋到記殿講 雖依例爲之 春則賜第, 秋則會試 大抵科道多故若此 傾軋躁競 皆由乎茲也 …

21) 『英祖實錄』 영조 46년(1770) 7월 6일 경술, 庚戌 行晝講 教曰 近者百弊 由科舉頻數 古則節製赴會試 其後直赴殿試 猗歟爲青衿之盛意也 遵古抑濫 亦時中之義 今後三日·九日製·黃柑 一遵昔年例賜第 人日·七夕製 皆賜會試 而竝付增別試 講經生春秋到記 勿論親臨命官 依舊例皆赴殿試 而居首者多 則比較無過一人 日次殿講 皆許會試 而此則居首雖多 勿爲比較 凡會試給分之類 式年依舊例舉行 以示予暮年弛張之意.

22) 정지연(2018a)의 앞 글, pp. 75-77.

23) 『承政院日記』 영조 48년 1월 2일 <무술>, 以上缺 壬辰正月初二日巳時 上御集慶堂 … 上曰 今日崇政殿命官殿講 試官左相·吏參尹得養·林鼎遠·尹勉升 入直兩儒臣·承旨·左副進參 畢講後 純通儒生 率入四學儒生 一體應講 出傳教 …; 壬辰正月初二日三更 上御集慶堂 儒生殿講科次入侍時, … 上曰 純通比較儒生 幾人耶 相福曰 純通儒生 合五人矣 上曰 今番則多矣 上曰 以詩傳比較可矣 … 上命承宣書傳教曰 居首幼學柳頤玄直赴殿試 之次幼學金士晦·鄭來成·池德斌 洪聖淵直赴會試 生員洪光胤 幼學金理簡·姜棖·文躍淵·裴聖喆·李璉·金文瑞各給二分, 幼學閔鎮衡·鄭允一·金履遂·李敬裕·朴顯輔·朴宗漢·全性直·趙思濂各給一分 出傳教 …

1) 춘·추도기의 시작

춘·추도기는 정조가 즉위한 후 처음 시행한 성균관 과시로, 정조는 즉위년(1776) 8월 26일에 추도기를 시행했다. 정조는 즉위년 8월 20일에 유생전강을 8월 26일에 시행할 것과 그 때의 응시자 명부는 8월 25일의 조식당 도기로 할 것을 명했다.²⁴⁾ 8월 24일에는 분제강(分製講)의 정식이 있으니 그것을 이틀 후에 승정전에서 시행하겠다고 했다.²⁵⁾ 8월 25일에는 다음날의 전강은 일차전강으로 처음 시행하는 선발이라 정지하기 어려워 시행하도록 명했지만, 봄과 가을에는 도기전강의 전례가 있고 마침 이 달은 도기에 해당하는 달이니, 별도로 도기전강을 설치하지 않고 다음날의 일차전강과 겸한다고 했다. 이어 승지를 성균관으로 보내 당일의 석식당 도기를 가져오게 하고 이들의 명부를 8월 26일의 전강과 제술에 아울러 붙이라고 분부했다.²⁶⁾ 정조즉위년(1776) 8월 20일-25일의 기사를 통해, 정조가 처음 8월 26일에 실시하려고 했던 성균관 과시는 일차전강이었으나, 분제강(分製講)의 정식-「태학유생원점절목(太學儒生圓點節目)」(1742, 영조18)²⁷⁾-이 있음을 근거로 하여 일차전강에 겸하여 도기분제강을 시행하도록 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다만 일차전강과 추도기 전강 및 제술의 응시자 명부는, 일차전강은 8월 20일에 수취(收取)를 예고한 8월 25일의 조식당 도기를 응시자 명부로 활용하고, 추도기 전강과 제술은 8월 25일 당일에 가져오

24) 『承政院日記』 정조 즉위년(1776) 8월 20일 기미, 丙申八月二十日辰時 上御尊賢閣 … 上曰 二十六日 儒生殿講 當以二十五日朝食堂到記爲之 國子長 以此知悉舉行 可也 命書傳教曰 大司成既承下教 而不可淆雜 二十六日儒生殿講 以二十五日朝食堂到記 爲之事 分付 上曰 掌議朴鏡·李唐白 竝解停 出榻教 民始先退 命書傳教曰 三嚴後 便殿乘輿 詣孝明殿展拜 親押於崇政月臺 由崇政門進發 禮兵房知悉 以此舉行 命書吏判批 命書傳教曰 吏判批下 今則固無撕捥之端 牌招察任 ….

25) 『承政院日記』 정조 즉위년(1776) 8월 24일 계해, 又傳曰 分製講有定式 再明日處所 崇政殿爲之.

26) 『承政院日記』 정조 즉위년(1776) 8월 25일 갑자, 丙申八月二十五日未時 上御尊賢閣 … 命書傳教曰 明日製述時 儒生硯具許入 試紙,自試所頒給事 分付 又命書傳教曰 明日試士 卽始初之舉, 而在儒生 亦是初見之日 禮儀不可草率 令大司成預爲指揮東西齋生, 分東西庭, 序齒以坐, 書冊隨從一切嚴禁事 分付 … 上曰 大司成入侍 出榻教 鄭民始進伏 上曰 到記儒生 何其數少也 民始曰 日昨勸入時 儒生入來者多 而又有疏錄修成後食堂之議 故或有選出之人 自致數少云矣 上命書傳教曰 科舉之頻數 卽一痼弊 而明日殿講 卽日次也 始初之舉 有難停廢 雖命爲之 春·秋又有到記殿講之例 今月又是到記之當月 而決不可各設 明日日次殿講 當兼行秋到記殿講 右副承旨 馳詣太學 今日夕食堂到記取來 竝付明日製講事 分付 ….

27) 『英祖實錄』 영조 18년(1742) 11월 12일 정묘, 丁卯 上引見大臣及大司成 下詢太學儒生圓點節目 便否 令大司成 就議于廟堂 更定節製試取之法 凡節製時 不并試方外儒生 而只試太學生 則以太學居齋百人中準五十點儒生試取 而到記儒生試取時 則製講從自願書入 而製講各取一人 齋任薦則以七人處 受謹悉然後薦用事定式.

계 한 석식당 도기로 하도록 했다. 정조가 추도기 시행을 명하면서 언급한 봄과 가을의 도기전강의 전례는, 「경인정식」에 따라 영조47년(1771)에서 48년(1772) 전반(前半)동안 시행되었던 도기전강을 이르는 것이다.

정조즉위년(1776) 8월 26일 추도기 실시 당일에는 정조가 승정전에 친림한 가운데, 전강과 제술의 명관은 우의정 정존겸(鄭存謙, 1722-1794)이 겸하게 하고, 그 이하 6명의 시관은 전강과 제술을 달리했다. 정조는 전강 명관으로 처음 좌의정 김상철(金尙喆, 1712-1791)에 이어 관부사 이은(李澂, 1722-1781)을 임명했으나, 이들이 모두 추도기에 참석하지 못하면서 정존겸을 제술에 겸하여 강서의 명관을 담당하도록 했다. 추도기 제술 문제는 책(策)으로 2명을 뽑아 각각 직부전시와 직부회시의 은사를 내렸고, 강서 서적은 『서전(書傳)』으로 하여 2명의 순통자(純通者)를 『시전』, 『주역』, 『중용』, 『대학』 순으로 비교하여 각각 직부전시와 직부회시의 은사를 내리고, 나머지 약(略)과 조(粗)를 받은 유생들에게는 사물(賜物)을 내리도록 했다.²⁸⁾

이상 정조즉위년(1776) 8월 26일의 추도기 전강과 제술의 시행 과정을 살펴보았다. 정조대 추도기로 시작된 춘·추도기 전강과 제술 규정은, 영조대 시행된 도기분제강(分製講) 규정과 영조46년(1770)의 「경인정식」을 바탕으로 성립하였음을 알 수 있다. 시행시기 및 시행 방법, 은사의 등급이 영조대의 시행과 대부분 일치하기 때문이다. 이하에서는 정조대 춘·추도기가 어떻게 운영되었는지 항목을 나누어 살펴본다.

2) 시행시기 및 수취 도기

정조대 춘·추도기는, 정조1-24년의 춘도기, 정조 즉위-23년의 추도기로, 춘도기와

28) 『承政院日記』 정조 즉위년(1776) 8월 26일 을축, ○ 丙申八月二十六日辰時 上詣崇政殿 到記儒生製述殿講入侍時, … 國榮曰 左議政金尙喆 既違講經 命官召牌 待罪金吾 來納命召 敢稟 上曰 左相勿待命事 遣史官傳諭 命召仍爲傳授 出傳教 上曰 李判府事 爲殿講命官 出傳教 製述命官右議政鄭存謙 讀券官前大提學李徽之 藝文提學鄭履煥 對讀官大司成鄭民始 行副司直徐有防 宗簿正尹弘烈 副司果金憲 以次進伏 上親題問策 … 上曰 都承旨入侍 李判府事筭子入之 出傳教 又曰 殿講命官 右相爲之 出傳教 上御崇政殿 講經命官右議政鄭存謙 考官判尹蔡濟恭 吏曹參判徐浩修 參考官行副司直南玄老 行副司直金普淳 修撰金觀柱 副司果尹尙東 以次進伏 上曰 講書以書傳落點 … 上曰 今日試講 至於五書 賜第無足惜矣 仍命書傳教曰 科制姑未變通 當遵前例 今日殿講時 居首儒生幼學金致泳 三經純通 庸·學亦皆純通 直赴殿試 幼學文燦奎 三經·中庸 雖皆純通 大學比較既不通 直赴會試 其餘略粗儒生 各賜紙三卷·筆三枝·墨三笏; 8월 27일 병인, ○ 丙申八月二十七日午時 上御尊賢閣 … 命國榮書傳教曰 昨日到記儒生製述居首生員鄭志儉 直赴殿試 之次進士朴堧 直赴會試 又命國榮 呼志儉新來 進退以出 命元始書傳教曰 科時在近 情理切急者外 諸臣呈單 一併勿捧.

추도기 모두 각각 24회 실시되었다. 춘·추도기는, 시행일자가 명시되어 있는 일차전 강이나 절일제와 달리, 각각 봄과 가을의 어느 시점에 왕명에 의해 시행되었다. 봄과 가을이라는 시기 외에 춘·추도기의 시행일자가 유동적인 것은, 제주도에서 굽이 세 번째 올라오고 난 후 시행하는 황감제와²⁹⁾ 비슷하다. 정조대 춘·추도기의 시행시기는 <표 1>과 같다.

<표 1> 정조대 춘·추도기 시행시기

시행시기(월)	춘도기				추도기				
	1월	2월	3월	4월	7월	8월	9월	11월	12월
시행 횟수	14	7	2*	1**	6	12	3	2***	1****

* 정조22년(1798)과 24년(1800)의 춘도기다. 정조22년 3월은 식년문과 복시와 전시가 있었고, 24년 3월은 별시 초시와 4월 3일 전시의 사이였다.

** 정조23년(1799)의 춘도기다. 4월 14일에 4월 16일 한학 문신 전강과 같이 시행할 것을 명했다.

*** 정조2년(1778)과 13년(1789)의 추도기다. 정조13년 추도기는 10월에 춘당대시-11월 4일-가 결정될 때 이미 그 즈음에 시행할 것을 결정하고,³⁰⁾ 11월 10일에 석식당 도기를 수취하게 하여 11월 11일에 시행했다.

**** 정조20년(1794)의 추도기로 12월 15일에 황감제를 겸하여 시행했다.

<표 1>을 통해, 정조대 춘도기는 대부분 1-2월에, 추도기는 대부분 7-8월에 시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시행시기는 성균관 식당 인원 수 제한이 없는³¹⁾ 절일제 및 황감제,³²⁾ 석채(釋菜)일,³³⁾ 과거(科擧)일³⁴⁾ 등과 비슷하게 하여, 보다 많은 생원·진사가

29) 윤기 저, 이민홍 역주(1999), 『조선조 성균관의 교원과 태학생의 생활상(완역 泮中雜詠)』,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p 137.

30) 『承政院日記』 정조 13년(1789) 10월 11일 계해, 李晩秀啓曰 來十六日 儒生殿講日次矣 敢稟 傳曰 爲之 前此日次 有待下教待令之命 今番兼行事 分付 九日製秋到記 亦當今月內設行 直赴之類, 當赴觀武才 對擧唱榜 以此意預令諸生 知悉.

31) 『正祖實錄』 정조 1년(1777) 6월 13일 정미, 申明居齋儒生圓點之法 成均館進圓點節目 【節目 … 一 親臨酌獻禮及春秋釋菜 入清齋齊時 則生進勿拘額數 … 一 增廣別試庭試時 科日前二日生進勿拘額數 一 凡節製時 自下教日生進勿拘額數】.

32) 정조2.11.12-11.10.황감제[통방외], 3.1.10-1.7.인일제[원점], 8.1.22.-1.18.인일제[통방외], 9.1.9.-1.7.인일제[통방외], 12.1.10-1.7.인일제[통방외], 13.11.11-11.4.춘당대시/11.10.황감제[통방외], 14.2.24.[講]/2.27.[製]-2.26.인일제[통방외]/2.25.알성시, 14.9.8.-9.6.[구일제], 16.1.6.-춘도기겸인일제[통방외], 19.1.24.-1.25.인일제[통방외], 20.12.15-추도기겸황감제, 22.8.22.[講]/9.12.[製]-9.9-11.인일제[원점], 23.9.24.-9.27.칠일제[통방외]/9.30.알성시, 24.3.28.-3.21.[별시초시]/3.22.인일제[통방외]/3.25.삼일제[통방외]/4.3.[별시전시].

33) 정조4.8.3일 추도기, 10년(1784) 2월3일 춘도기, 15년(1789) 2월2일 춘도기, 18년(1794) 2월11일 춘도기.

34) 정조13.11.11-11.4.춘당대시/11.10.황감제[통방외], 14.2.24.[講]/2.27.[製]-2.26.인일제[통방외]/2.25.알성시,

《교육사학연구》 제28집 제2호(2018. 11.)

응시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외에 이미 시행한 석채도기(釋菜到記)를 응시자 명부로³⁵⁾ 활용하기도 했다.

정조대 춘·추도기는 시행일 1-2일 전에 시행명령과 함께 대개 어느 시점의 도기를 수취할 지도 왕명으로 결정되었다. 정조대 춘·추도기에 사용된 도기, 즉 수취 도기를 표로 정리하면 <표 2>와 같다.

<표 2> 정조대 춘·추도기 수취 도기*

수취 도기		춘·추도기 시행일(재위년.월.일)		
석채도기[석채일]		①2.2.18.[2.6.] ②12.8.26.[8.5.] ③17.2.9.[2.4.] ④21.8.22.[8.1.]		
시행명령일 하루전 조/석식당 도기		①7.7.10. ②5.8.3.		
시행 명령일 (시행일 하루전)	조식당 도기	①6.8.24.		
	석식당 도기**	①즉위.8.26. ②2.11.11. ③15.8.11.	①12.1.10. ②17.8.20	①21.2.28.
	③1.1.10. ④3.7.17. ⑤4.8.3. ⑥5.1.13. ⑦8.1.22. ⑧9.1.9. ⑨9.8.2. ⑩10.8.6. ⑪11.1.11. ⑫11.7.28. ⑬13.1.26. ⑭13.11.11. ⑮18.9.2.	③20.1.15.		
시행명령일 다음날 조식당 도기		①1.1.4. ②1.7.5. ③4.1.13 ④6.1.9. ⑤7.1.24. ⑥15.2.2. ⑦16.7.19. ⑧8.2.11.		
기타 도기		①8.7.18.: 7.12.종묘 및 경모궁 지영 유생 확인, 추도기 전까지 식당액수 제한 풀고 7.17.에 당일과 이전 도기 가져오게 함 ②10.2.3.: 2.3.석채일, 2.1.에 성균관에 유생 3백여 명 있음을 확인하고 이틀 후에 시행하겠다고 함 ③14.2.24.[製]/27.[講]: 2.23.에 석채(2.6.)참반유생 외 경·향 생·진을 24일 조식당에 참가하게 하여 실시함. ④16.1.16.: 1.7.에 인일제와 겸행을 결정하거 1.1. 도기를 가져오게 하였으나, 1.15에 지영유생 1백여 명 확인 후 통방외를 결정함 ⑤19.1.24.: 1.23.에 1.21.-23.석식당 도기 수취하게 함 ⑥19.8.2.: 7.26에 7.25.-7.26.조식당 도기를 수취하게 하면서 때에 임하여 석식당 도기를 다시 수취하게 했으므로, 시행을 명한 8.1.의 석식당 도기가 추가되었을 것임 ⑦20.12.15.: 12.11.에 황감제와 겸행하여 15일에 춘당대에 식당을 설치하고 생진 및 거재유학을 대상으로 실시할 것을 명함. ⑧22.3.7.[講]/3.12.[製]: 원래1.2.에 시행하려던 것을 3.1.에 갱폼하게 되면서, 기존의 1.2.문묘 및 종묘지영유생 도기+신방 생·진+3.2.조식당 도기 시행을 결정함		

23.9.24.-9.27.칠일제[통방외]/9.30.알성시, 4.3.28.-3.21.[별시초시]/3.22.인일제[통방외]/3.25.삼일제 [통방외]/4.3.[별시전시].

35) 정조2년(1778) 2월18일 춘도기, 12년(1786) 8월26일 추도기, 14년(1790) 2월24일[製]/27일[講] 춘도기, 17년(1793) 2월9일 춘도기, 21년(1797) 8월22일 추도기.

	⑨22.8.22.[講]/9.12[製]: 8.21.에 전강은 8.21.조식당 도기로 22일 시행, 제술은 8.1.-8.25.식당 도기로 26일 시행을 명하였으나, 제술은 뒤로 미뤄짐 ⑩23.9.24.: 9.23.에 9.1.-9.23.조식당 도기를 가져오게 함 ⑪24.3.28.: 3.25.에 28일 시행을 명하고 26일에 전강은 3.26.석식당 후에 도기를, 제술은 금년 식당의 반점(半點) 이상자를 허부하게 하고 3.27.석식당 후에 도기를 가져오게 함
--	---

* 정조14년(1790) 9월8일 추도기는 9월 승정원일기가 없어, 정확한 시행과정을 파악하지 못했다./정조23년(1799) 4월16일 춘도기는 4월 14일에 시행을 명하였으나 도기 수취에 관한 언급은 없다.
 ** 시행명령 시점을 기준으로 오시(11-13)까지의 석식당 도기와, 미시(13-15시)부터의 석식당 도기를 구분했다.

<표 2>를 보면 정조대 춘·추도기의 수취 도기는, 기타의 경우를 제외하고, 시행명령 시점 이전의 도기가 10회, 시행명령 시점 이후의 도기가 21회이고 이 두 경우를 아우르는 경우가 3회이다. 도기는 시행명령 시점 이후의 도기를 가져오게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것은 정조5년(1780) 7월에 고례에 어긋나는 것을 알면서도³⁶⁾ 도기를 예고하고 가져오게 하고 있다는 정조의 언급에서도 알 수 있다.³⁷⁾ 또한 정조8년(1784) 1월 정조는 춘·추도기 3일 전에는 식당의 생원·진사의 수를 정액에 구애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전례라고 언급하고 있다.³⁸⁾ 춘·추도기 명령일은 시행일 1-2일 전이었고, 춘·추도기 3일 전에 실제로 식당 액수 제한을 푸는 경우가 있었는지는 불분명하다. 그러나 정조의 언급을 통해, 적어도 춘·추도기가 예고되어 시행되는 경향이 있었음은 알 수 있다.

정조가 춘·추도기 운영에서 이처럼 수취 도기를 예고하곤 한 것은, 유생들의 상시성균관 거재라는 ‘원칙’을 관철시키기보다는 유생들의 성균관 거재의 ‘동인’을 강화시

36) 정조는 최근의 도기 시취가 고례에 어긋난다고 했지만, 영조대에도 명령일 당일 조식당이나 (영조33.10.17., 38.5.17., 40.1.13, 43.1.21., 45.3.4., 46.1.20., 51.5.22., 52.2.15.) 이전 시기 식당 도기 (영조38.2.9.)를 가져오게 하는 것 외에, 명령일 오전 즈음에 당일 석식당 도기를 가져오게 하는 경우(영조13.9.27., 36.4.12.)가 있었다.
 37) 『正祖實錄』 정조 5년(1781) 7월 4일 갑진, 甲辰 敎曰 近年以來 罕設科擧 故春秋到記 必分製講 各取一人 又於收到記之時 不收已食堂之擧案 先以將收之意知委者 非不知差違古例 而蓋從闊狹之意也 諸生不體此意 常時居泮, 不但絕罕, 并與春秋到記之月 而食堂之數 多不過數十人 到今弛張之擧 反爲僥倖之歸 予所以爲諸生慨慨者也 今後 有難膠守近例 以此令大司成 布諭諸生 俾爲勤勵 月講旬題 皆如期設行乎 圓點儒生 已準式者 亦幾人乎 并令大司成 具由草記.
 38) 『正祖實錄』 정조 8년(1784) 1월 7일 계사, 癸巳 御春塘臺 行歲首犒饋 敎曰 歲首犒饋, 雖不得不倣例 而當此歉荒 戒在張大 其勿用樂 以示予意 又命圓點生 依春·秋到記 前三日 勿拘額數之例 特令自初七日朝食堂 限春到記 勿拘百人 竝許赴到記 命題 令諸生退而應製 仍遣史官于泮宮 賜諸生酒膳 及製進 施賞有差.

킨 것으로 볼 수 있다. 성균관 유생들이 성균관에 거재하는 이유 중 하나는, 성균관 과시에 참여하는 기회를 얻기 위해서다. 정조대 성균관의 생원·진사가 절일제 및 황감제의 안정적인 응시를 위해서는 1년에 30점의 원점을 채워야 했는데, 이것은 원점의 누적에 의해 확보되는 기회로 응시 여부가 상대적으로 예측 가능했다.

춘·추도기는 도기 수취 시점에 성균관 식당에 참여해야 하므로, 만약 명령일 이전의 도기를 수취하는 경우는, 설령 장기간 성균관에 거재하고 있어도 해당 시점에 식당에 참여하지 않으면 응시 기회를 얻지 못하게 된다. 이 점에서 춘·추도기는, 원점을 기준으로 하는 절일제 및 황감제에 비하여, 응시의 불확실성이 컸다. 더욱이 절일제 및 황감제는 준점(準點, 1년 원점 30점)이나 식당 참여에 상관없이 응시 가능한 통방외(通方外)의 명이 내려지기도 했으므로, 춘·추도기에서 이전의 도기 명부로 응시 기회를 결정하는 것은 이들 과시에 비하여 거재유생들에게는 불리할 수 있었다.

이에 대해 정조는 주로 앞날의 식당 도기를 가져오게 하면서, 춘·추도기에 응시하고자 하는 유생이 성균관 식당에 참여하도록 유도했다. 앞날의 도기라고 하지만, 명령일 당일 저녁이나 다음날 아침 도기였으므로 멀리 있는 유생들이 식당에 참여할 수 있는 시간은 되지 않았다. 즉, 도기 시행명령 즈음에 성균관에 거재하고 있거나 주변에 머무르고 있는 유생들로 하여금 식당에 참여하도록 독려했던 것이다.

정조대 춘·추도기를 명령일 이전 도기로 시행한 것 중 4번은, 석채도기만을 응시자 명부로 활용했다. 이 경우 석채시기와 춘·추도기 시행일은 짧게는 5일, 길게는 21일 정도 차이가 난다. 석채도기와 함께 다른 시기의 도기를 춘·추도기에서 사용한 경우는 정조10년(1784) 2월의 춘도기와 정조14년(1790) 2월의 춘도기다. 정조는 석채도기를 사용을 일반(一般)으로 하지는 않았으며, 간혹 사용하는 경우에도 사용 명령을 훗날에 내려 일찍이 석채에 참여한 유생만 응시할 수 있게 했다. 이것은 성균관 유생들이 문묘 수직 및 춘·추석채(春·秋釋菜) 행사를 보다 중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외 기타의 수취 도기는 대부분 그 수취 기간을 길게 한 것들이다. 정조대 말이 되면, 1달 동안의 도기 명부나 정초(正初)부터 춘도기 시행 시까지 3달여의 도기 명부에 의해 춘·추도기를 시행하기도 한다. 이것은 성균관 식당에 참여한 생원·진사가 보다 많이 춘·추도기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2) 시관 및 응시자

정조대 춘·추도기의 시관은, 대부분 전강과 제술에 각각 7명의 시관을 임명하였고,³⁹⁾ 후대에 간혹 전강과 제술의 시관을 겸용하기도 했다.⁴⁰⁾ 춘·추도기에서 7명의 시관을 갖추는 것은 전시(殿試)에 해당하는 형식으로,⁴¹⁾ 춘·추도기의 연원이 도기전강과 도기분제강이고, 도기전강은 일차전강에 연원을 두는 것과 관련되어 있다. 즉 일차전강의 시관을 식년시 문과 전시의 시관과 동일하게 한 것과 마찬가지로, 춘·추도기 전강과 제술의 시관도 그에 따라 각각 7명으로 시행되었다.

정조대 춘·추도기의 연원이 되는 영조대 도기분제강은 일반적으로 전강과 제술의 시관을 겸용했다.⁴²⁾ 연원을 두는 도기분제강과 달리 전강과 제술에 각각의 시관을 임명한 것은, 춘·추도기가 하나의 과사이면서도 그 운영에 있어서는 전강과 제술이 별도의 과시로 운영되는 측면이 있었음을 알려준다. 이것은 춘·추도기 전강과 제술의

- 39) 『承政院日記』 정조 1년(1777) 1월 4일 신미, 丁酉正月初四日辰時 上御崇政殿 儒生製講入侍時 … 製述試官右議政鄭存謙 兼禮曹判書蔡濟恭 吏曹參判沈履之 大司成李秉鼎 兵曹參議李義翊, 吏曹正郎李秉模 佐郎李敬養 講經試官領敦寧金陽澤 行工曹判書徐命善 兵曹參判李在簡 禮曹參議李普觀 刑曹參議李崇祐 兵曹正郎沈念祖 副司果金熹行四拜後 製述試官以次進伏 …; 정조 15년(1791) 8월 11일 계축, 辛亥八月十一日卯時 上御仁政殿 抄啓文臣親試·文臣製述·到記儒生製述殿講入侍時 … 上曰 文臣製述試官 以到記儒生製述試官爲之 出榻教 引儀唱試官以下入就位行四拜禮 親試文臣製述·儒生製述 試官左議政蔡濟恭 戶曹判書李秉模 吏曹參判朴祐源, 行大司成李祖源 吏曹參議沈煥之 行副司直李晚秀·李敬五·徐有成 儒生殿講試官知中樞府事具允鉦 行副司直申應顯 兵曹參判柳應 刑曹參議徐美修 兵曹參議尹長烈 校理尹光善 副司果張錫胤 以次入就位行拜禮進伏訖 …; 정조 20년(1796) 12월 15일 병술, 丙辰十二月十五日辰時 上御春塘臺 親臨柑製 兼行秋到記製講 … 殿講試官行判中樞府事李秉模 大護軍李秉鼎·金載瓚 禮曹參議魚用謙 行副護軍宋銓 成均館直講朴吉源 兵曹正郎鄭晚錫 製述試官行禮曹判書閔鍾顯 繁恩君李敬一 副護軍李肇源·朴宗來 副司直金履喬 弘文館修撰金熙采 以次進伏訖 ….
- 40) 『承政院日記』 정조 19년(1795) 8월 2일 경진, 乙卯八月初二日卯時 上詣仁政殿 秋到記儒生製述殿講入侍時 … 讀券官行判中樞府事李秉模 兵曹判書沈煥之 行副司直李太亨 對讀官行副司直成種仁·鄭尙愚 副司果申鳳朝 副護軍李儒修 以次侍立 … 命書傳教曰 製述試官 以殿講試官 仍爲之 …; 정조 21년(1797) 8월 21일 정사, 丁巳八月二十一日辰時 … 又命書榻教曰 到記儒生殿講試官 以製述試官兼用 ….
- 41) 『續大典』 「禮典」 諸科, 【式年文科殿試】 … 讀券官 議政一員 從二品以上二員 對讀官 正三品以下四員… 【增廣文科殿試】 …<讀券官·對讀官 同式年文科殿試>… 【殿講】 …<考官同式年文科殿試…>.
- 42) 『承政院日記』 영조 30년(1754) 11월 7일 임오, 甲戌十一月初七日巳時 上御明政殿 到記儒生 四學儒生 親臨殿講入侍時 試官李天輔·洪象漢·李喆輔 參試官金致仁·趙載洪·沈鏞·趙曦 …; 영조 44년(1768) 4월 2일 기미, 戊子四月初二日辰時 上御集慶堂 到記儒生製述殿講入侍時 試官金致仁·趙雲達·尹得養·洪趾海·金光國·金載順·李致中, …; 영조 52년(1776) 2월 20일 임술, 丙申二月二十日辰時 王世孫座興政堂 到記儒生 殿講製述入對時 … 試官判府事金陽澤 大提學李徽之 行副司直徐有隣 副司直李普行·李商巖 兼司書洪國榮 副校理朴相來 以次進伏訖 陽澤曰 近日睿候 若何 令曰 一樣矣 陽澤曰 臣與文衡有相避 殿講則當爲同參 而製述則不可干攝矣.

응시자, 나아가 은사를 받은 이들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도 있다.

춘·추도기는, 영조대 도기분제강과 도기진강의 전례에 따라,⁴³⁾ 응시자들은 도기 수취 시점에 성균관과 사학(四學)에 거쳐하면서 식당에 참석한 유생들이었다.⁴⁴⁾ 성균관 거재 유생은, 생원·진사 1백 명, 재임인 장의(掌議)2명, 색장(色掌) 4명,⁴⁵⁾ 하재(下齋)의 유학(幼學) 20명으로,⁴⁶⁾ 총 126명이었다. 사학(四學) 거재 유학(幼學)은 각 학(學)에 5명씩 총 20명이었다.⁴⁷⁾ 즉, 일반적인 춘·추도기의 응시자들은 생원·진사 106명, 유학 40명이었다. 여기에 정조는 앞서 『태학지』 세 번째 기사에서 언급한 것처럼 정조6년(1782) 1월 춘도기부터는 사학 재임도, 성균관 재임이 춘·추도기에 성균관 유생들을 이끌고 참석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춘·추도기에 사학 유생들을 이끌고 참석하고 응시하도록 했다.⁴⁸⁾ 사학 재임은, 각 학(學)에 6명씩 총 24명이었다.⁴⁹⁾

43) 『承政院日記』 영조 12년(1736) 9월 6일 정유, 辰時 上御興政堂 儒生殿講時 … 少退時 與大司成徐宗玉相議 有可以定式者 故敢達 太學則朝夕食堂時 例有到記 井問書名 各自着押, 而四學則不設食堂 亦無到記 故殿講時 各學只書儒生五人名 着署送于太學 此豈有憑準可信者乎 今後則別爲一冊 排書十二朔 朝夕飯時 井問署名 一如太學 而冊張相連處 輒皆預爲踏印以給 如各司公座簿之樣 每當殿講命下 一從其日食堂到記 書入學案宜當 然則不過用二十許丈冊子 而臨時冒僞之弊 庶可防矣 以此定式而後 館學有窠 則亦必爲試講許入 毋得撓改事 各別嚴飭 何如 上曰 依爲之 出條; 영조 18년(1742) 9월 25일 신사, 九月二十五日辰時 上御崇文堂 親臨成均館 到記儒生·四學儒生 殿講製述入侍時 …; 영조 51년(1775) 2월 18일 병신, 乙未二月十八日午時 上御集慶堂 … 左副承旨持太學到記入侍 出榻教 上曰 藥房提調 持湯劑更爲入侍出榻教 上命著東 讀奏洪相簡壯 元文又命奏館學儒生到記後 命儒臣副校理李命勳 修撰南絳老讀問答 …

44) 『承政院日記』 정조 즉위년(1776) 8월 26일 을축, 丙申八月二十六日辰時 上詣崇政殿 到記儒生製述殿講入侍時 … 讀公事訖 講官進伏 四學儒生 次次入講 皆爲純不 上曰 四學儒生 無一應講者 其不爲通讀而然耶 …

45) 『續大典』 「禮典」 獎勸, 成均館生員·進士員數毋過百額 輪回居齋以準五十點 <掌議·色掌別爲居齋 五十點未準之前 切勿遞改 或闕額有限 應入者多則以榜次爲先後 同榜則以年齒爲先後>; 『正祖實錄』 정조 1년(1777) 6월 13일 경미, 申明居齋儒生圓點之法 成均館進圓點節目 【節目一 居齋儒生額數寄齋外生進 以一百人爲準 而雖一人無得踰額 如或闕額有限 而應入者多 則以榜爲次 同榜則以年齒爲次 一 掌議二人色掌四人 百額外使之別爲居齋 點數則與他生進一體施行 …】 .

46) 윤기 저, 이민홍 역주(1999)의 앞 글, pp. 8-9.

47) 『續大典』 「禮典」 生徒, [儒學] 四學 各減九 <令爲各五>.

48) 『正祖實錄』 정조 6년(1782) 1월 10일 경미, 丁未 御春塘臺 科次到記儒生試券 比較試講儒生 … 教曰 館學無異 此後春秋到記 學儒·齋任 一體押班應試; 『太學志』 卷之八 「選舉」 到記, (當宁) 六年壬寅 始命四學齋任許赴到記科 上深科學頻數之弊 臨御以來設科甚罕 既又以軫到記之 只取生進而幼學無以觀光 特令四學掌議色掌依太學掌議色掌例 春秋到記同爲押班 開赴學之露著爲式.

49) 『英祖實錄』 영조 24년(1766) 9월 14일 신사, 又下教曰, 前日已諭而欲見之, 太學及四學掌議·色掌, 明日待令.; 『承政院日記』 정조 12년(1788) 1월 2일 을축, 四學掌議·色掌別單書啓 中學掌議幼學金敬淳 幼學尹魯東 色掌幼學李肇源 幼學李後秀 幼學金鍾翼 幼學朴宗明 東學掌議幼學申瓘 幼學鄭存大 色掌幼學李來鉉 幼學元在行 幼學徐榮輔 幼學金基胥 南學掌議 …

사학 거재 유생보다도 많은 사학 재임의 숫자는, 이들이 단순히 거재 사학 유생만이 아니라 사학에 거재하지는 않지만 사학의 관리 하에 있는 유학들의 대표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실제로 사학 유생의 소(疏)가 올라올 때 보면, 적게는 칠십여 명⁵⁰⁾ 많게는 몇 백여 명⁵¹⁾ 이상의 사학 유생을 확인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관·학(館·學)⁵²⁾ 유생의 이름으로 올라온 소에서도, 성균관 하재 및 사학의 거재 유학 40명을 제외하고도, 수백 명의 유학을 확인할 수 있다.⁵³⁾

춘·추도기에 참여하는 생원·진사의 수는 거재 인원수 규정에 따르면 최고 106명만이 가능했다. 정조는 거재를 희망하는 생원·진사가 많으니 거재 인원, 즉 식당 액수를 늘려달라는 유생들의 청이 있을 때도 『속대전』 및 정조1년(1777) 「거재유생원점절목」의 인원수를 고수했다.⁵⁴⁾ 성균관 거재 생원·진사 수는 정해져 있었지만, 「거재유생원점절목」에서는 작헌례(酌獻禮) 및 춘·추석채(春·秋釋菜)의 입청재(入淸齋) 기간, 증광시·별시·정시(庭試) 전 이들 동안 및 절제(節製)-절일제 및 황감제-를 하교한 날부터 성균관의 생원·진사 수는 정원에 구애받지 않도록 했다.⁵⁵⁾ 또한 앞서 『태학지』의 첫 번째 기사처럼 정조4년(1780) 8월 추도기에는 준점(準點) 유생을 응시하게 하고,⁵⁶⁾ 후대에는 춘·추도기의 응시자 명부로 장기간의 도기를 사용하게 하기

50) 『承政院日記』 정조 즉위년(1776) 5월 22일 갑오[임진], 四學儒生幼學李性重 … 金良鈺等疏曰 …
 51) 『承政院日記』 정조 10년 6월 9일 신사, 四學儒生臣金孝稷 … 李東益疏曰 …; 『正祖實錄』 정조 15년(1791) 2월 22일 정묘, 四學儒生李明吾等上疏曰 …; 『承政院日記』 정조 15년(1791) 2월 22일 정묘, 幼學李明五 … 進士尹範東 幼學洪樂秀 … 幼學丁載老·李祥行 進士李周龜等疏曰 …; 정조 22년(1798) 9월 1일 신유, 四學儒生俞春柱 … 俞漢教等疏曰 …
 52) 본고에서 성균관과 사학을 통칭하는 관학(館學)의 우리말 표기는, 사학(私學)과 대비되는 관학(官學)과 혼동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관·학」으로 한다.
 53) 정조 즉위년(1776) 8월 22일 신유, 館學儒生進士李琛 … 高克明 幼學李澤模 … 洪準源疏曰, …; 정조 10년(1786) 12월 22일 신유, 館學儒生 生員韓啓重 進士鄭世淳 … 朴宗烈 幼學尹可行 … 李義常等疏曰 …; 정조 20년(1796) 9월 17일 기미, 館學儒生 生員洪準源 … 沈允之 幼學閔毅顯 … 韓在衡等疏曰 …
 54) 『承政院日記』 정조 8년(1784) 1월 7일 계사, 甲辰正月初七日辰時 上御春塘臺 … 上曰 今日召見儒生 非爲設試 置之可也 … 諸生中有所見者 次次進奏 可也 洪祐淵·尹勉祉·朴大和·趙宜陽等曰 儒生之未參食堂者甚多 圓點之難以盡充 誠如聖教 若勿拘額數 通融許入則 似好矣 上曰 儒生百額 卽先朝成憲 有難猝改矣 祐淵等曰 然則限以一朔 儒生準二十點後 新入故出 以爲次次準點之地 則似好矣 上曰 予意非不念此 而但鄉曲儒生赴京者 非賢關 難以住着 若以圓點之已準 而遽令退去 則此亦可矜 大抵勿拘額數 則有違先朝之憲章 新入故出 則亦非待士之本意 以此以彼 猝難輕議矣 …
 55) 『正祖實錄』 정조 1년(1777) 6월 13일 정미, 申明居齋儒生圓點之法 成均館進圓點節目 【節目 … 一 親臨酌獻禮及春秋釋菜 入淸齋齊時 則生進勿拘額數 … 一 增廣別試庭試時 科日前二日生進勿拘額數 一 凡節製時 自下教日生進勿拘額數】.
 56) 『太學志』 卷之八 「選舉」 到記, 當宁四年庚子 上以圓點復設後 無別設之科 無以聳動多士 命□秋

도 했다. 이에 따라 준점 유생이 응시하거나 식당 인원수 제한이 없는 시기에 실시된 춘·추도기는, 관·학의 유학 40명을 제외하고도, 수백 명의 생원·진사가 응시하곤 했다.⁵⁷⁾

춘·추도기에 응시하는 생원·진사 수가 증가하더라도 이들 대부분은 제술에 응시하고 전강의 응시자 수는 큰 변화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전강의 시험 방식은 1명의 응시자에게 7명의 시관이 각각 성적을 매긴 후 그 중 다수(多數)에 따라 최종 성적을 내는 것으로, 응시자가 과시 당일에 증가하게 되면 춘·추도기 시행시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었다. 실제로 영조대 도기명부에 있는 유생 전원을 전강으로 시험했을 때는 7-80명의 인원을 시험하느라 꼬박 이들의 시간이 소요되기도 했다.⁵⁸⁾ 정조대 춘·추도기 전강의 응시자 수는, 기록이 남아있는 경우를 보면 대략 40명 정도이다.⁵⁹⁾

춘·추도기에 참여할 수 있는 성균관 하재와 사학(四學), 즉 관·학의 거재 유학(幼學) 40명의 선발에 관해서는, 『속대전』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성균관과 사학의 기재생(寄齋生)은, 경·향(京·外) 유생 중 강서 시험에서 1차 선발된 자와 통독 강서에서 기준점이 되었음에도 입격하지 못한 자를 순차적으로 보충한다. <팔도(八道)의 유생 중에 경서의 뜻에 능통한 자 1명을 관찰사가 대사성에게 알려서 그에 따라 보충하도록 한다. ○ 서도(西道)와 북관(北關)은 각각 1명씩 보충하도록 한다. ○ 제주유생은 비록 식년이 아니더라도 사학유생의 승보례에 따라 고강하여 입격하는 것을 허락한다. ○ 사적으로 입학하려는 자는 일절 막는다.>⁶⁰⁾

到記儒生製述時 已準點未參食堂儒生 一體應試; 『承政院日記』 정조 4년(1780) 8월 2일 무신, 以備忘記 傳于李致中曰 圓點復設後 無別設之科 雖出於罕設之意 其爲蔑效於聳動作興 亦可知矣 明日到記儒生製述時 圓點儒生中 已準點未參夕食堂人 一體應試.

57) 『承政院日記』 정조 4년(1780) 8월 3일 기유, 庚子八月初三日卯時 上詣春塘臺 秋到記儒生分製講入侍時 … 上謂時偉曰 儒生 食堂外有幾人耶 時偉曰 食堂外無之矣 上曰 都數爲幾許耶 時偉曰 三百十九人也. 命讀儒生入門數 爲三百十三人也 上曰 儒生多矣 …; 정조 8년(1784) 7월 18일 신미, 甲辰七月十八日卯時 上詣春塘臺 抄啓文臣·秋到記儒生製述入侍時 … 上曰 儒生入門數幾何 聖彬曰 三百八十四人矣 …; 정조 23년(1799) 4월 16일 갑진, 己未四月十六日卯時 上御明政門 春到記儒生製述試取 … 益運讀奏到記儒生收券三百八十四張 命科次入侍 …; 정조 24년(1800) 3월 28일 경오[경진], 庚申三月二十八日辰時 上御春塘臺 抄啓文臣親試 春到記儒生製述殿講 … 集斗奏儒生入門爲七百五十七人 抄啓文臣入門爲二十人矣 ….

58) 박현순(2013a)의 앞 글, p.245.

59) 『承政院日記』 정조 5년(1781) 8월 3일 임신[계유], 辛丑八月初三日卯時 上御春塘臺 親臨秋到記儒生分製講入侍時 … 命開講 生員李振玉等四十一人 以次進前講書傳 幼學趙象基進講 …; 정조 6년(1782) 6년 1월 8일 을사, 壬寅正月初八日酉時 上御觀物軒 … 製述儒生 其數百十一人 而請經生 爲四十三人矣….

60) 『續大典』 「禮典」 獎勸, … 成均館及四學寄齋 以京·外儒生中試講被抄者 及通讀講準分而未及入格者 循次填補 <八道儒生中能通經義者一人 令觀察使移文師儒長 隨填補 西·北儒生 各給一額

이 규정에 따르면 관·학의 거재 유학은, 관찰사의 추천에 따라 강서 시험을 치른 자나, 성균관 과시 중 하나인 통독(通讀)의⁶¹⁾ 강서에서 기준점을 넘겼으나 식년문과 직부회시 은사를 받지 못한 이들이었다. 이 규정을 통해, 사학(四學)의 유학이라고 하더라도 한성(漢城) 출신만은 아니며 지방의 유생들도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또한 관·학의 유학은 강서 시험에 의하여 입학하였으므로, 이들 대부분은 성균관 과시 중 춘·추도기 전강과 일차전강, 통독 강서에 응시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속대전』의 관·학 유학의 선발 기준이 그 이전부터 시행되고 있었음은 영조15년(1739)과 영조17년(1741)의 기사에서 알 수 있다.⁶²⁾ 또한 이 기사를 통해, 관·학의 유학은 강서에 능한 유생, 즉 치경유생(治經儒生) 내지 경공생(經工生)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영조-순조대를 중심으로 승정원의 소관 사무에 대한 규칙을 정리한 『은대편고(銀臺便攷)』에도 『속대전』의 관·학 유학 선발 규정이 그대로 수록되어 있는데,⁶³⁾ 이를 통해 해당 규정이 정조대도 유지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사학(四學) 재임은, 관·학의 유학과 달리, 통독 강서에는 대부분 응시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⁶⁴⁾ 정조는 정조6년(1782) 1월 춘도기부터 사학 재임을 춘·추도기에 참

濟州儒生 雖非式年依四學儒生陞補例許令考講以入 私托圖入者一切防塞>.

- 61) 『續大典』 「禮典」 獎勸, … 成均館及四學寄齋 以京·外儒生中試講被抄者 及通讀講準分而未及入格者 循次填補 ….
- 62) 『承政院日記』 영조 15년(1739) 6월 16일 신묘, 六月十六日卯時 上御熙政堂 … 顯命曰 鄉儒之羈旅京城者 饑寒可矜 而皆其自取 今若選取 則八路被選之類 其數必多 而咸聚京中 以待出窠 其羈旅饑寒之苦 尤當如何 而勢必歸怨於朝廷矣 春躋曰 昔年則學校抄入試講七書 故宰臣鄭錫五 曾亦爲此講 而誦十六分 今若合講京外諸生 而選入能通七書者 則除奔競之習而庶有作成之效矣 瀟曰 七書盡爲試講 則必得習熟經工者以入 此最爲好矣 上曰 自前有七書盡講之規 此後大司成 各別申飭 盡講七書 能通者 許入館·學 可也出學條 …; 영조 17년(1741) 1월 28일 갑오, 又以成均館官員 以同知館事大司成意啓曰 … 近來諸道治經儒生, 來集京城者, 至於百餘人之多, 京中治經之士 其數又爲夥然 而通館·學居齋之數 僅爲四十窠 雖以講次許入 其栖遑道路 無所托跡者 尙多 況於考講之外 或有循私許入之弊 則京鄉無勢之人 雖經年閱歲 斷無入齋之望 此後則毋論京鄉儒生 試講被抄者及通讀準分而未及入格於初試者 循次許入 國子堂上及四學教授 切勿以私行下入齋事 更爲嚴明定式 何如 傳曰 允.
- 63) 『銀臺便攷』 「禮房攷」 春秋到記, 春秋到記製述殿講 待下教學行 圓點生及寄齋生 分製講試取儒生一百人輪回居齋 以準五十點爲圓點 掌議二 色掌四 四學掌議各一 色掌各二 應試寄齋生, 本館及四學皆以京外儒生中 試講被抄者及通讀講準分未入格者 循次填補 西北儒生各給一額 八道儒生中通經義者一人 觀察使移文 大司成亦爲填補應講 額數無定數 製述則臨時稟旨 講則從多 性 取粗以上 以三經應講經單子 成均館修正入啓 待點下舉行 製講居首人賜第 雖命官設行 亦爲賜第 ….
- 64) 『承政院日記』 정조 2년(1778) 2월 20일 갑인, 戊戌二月二十日辰時 上御熙政堂 … 大司成柳巖 … 以次進伏訖. … 巖曰 圓點儒生 無故不參講會者 每一次削十五點 已有成典及節目 而其在勸獎之道 不可無復點之規 連三次參講 則還復其所削之點 何如 上曰 依爲之 出學條 巖曰 月三講時 生進及四學掌色應講者 其數不少 而館寄齋生 學居齋生 既有每年十二次通讀 而疊赴旬講 不無製礙之端 只令生進及四學掌色 參講 何如 上曰 依爲之 ….

석하게 한 후, 이어 이들을 성균관 재임과 함께 일차전강에 참석하고 자원일경(自願一經)을 강서하도록 했다.⁶⁵⁾ 재위 후반 경유(京儒)의 독서를 위해 사학 재임이 고강하는 법을 만들었다는 정조의 언급에서,⁶⁶⁾ 사학 재임의 거주지는 대개 한성이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반면 관·학의 유학은 대부분 향유(鄉儒)였던 것으로 보인다.⁶⁷⁾ 실제로 관·학 유학의 선발과 관련한 근심 중 하나는 기거할 곳이 없는 향유(鄉儒)에 대한 것이었다. 나아가 관·학의 유학이라고 하더라도, 성균관 과시의 강서와 제술 중 어느 것에 주력하는 지는 차이가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러한 경향은 생원·진사도 마찬가지였을 것이다.

3) 전강 경서 및 제술 시제(試題)

정조대 춘·추도기 전강은 『속대전』 법규에 따라 삼경(三經) 중 왕이 낙점한 일경(一經)을 응강하는 방식으로 시행되었다. 숙종대까지 전강의 응강 서적은 도기를 들 일 때 각각의 유생들이 무슨 책을 읽었는지의 기록도 들이게 하여 그 중에서 왕이 낙점하는 방식이었다.⁶⁸⁾ 진가 응시자 대부분은 『주역』을 응강했지만, 유생마다 응강 서적이 다른 경우도 있었다.⁶⁹⁾ 영조대는 유생들마다 전강 응강 서적이 다른 것에 대해서 공평성의 문제가 제기되면서, 사서(四書)를 제외하고, 삼경(三經) 중 왕이 낙점한 일경(一經)을 응강하도록 했다.⁷⁰⁾ 이러한 변화는 그대로 『속대전』 전강 법규로 반

65) 정지연(2018b)의 앞 글, pp. 172-177.

66) 『承政院日記』 정조 19년(1795) 11월 18일 을축, 乙卯十一月十八日辰時 上御誠正閣 … 上曰 京華子弟 何以則使之讀書乎 著東曰 古者以名經科取士 至於別試 亦有講規 故士多讀書者矣 上曰 予欲使京儒讀書 故爲設四學齋任考講之法 而今反無益矣 向者以三經應講之意 更爲定式 渠輩亦知之乎 煥之曰 古者用人之法 不但取其地閥 必兼文翰 然後方可顯用 故有地閥而少文翰者 不願登科而皆出蔭道 今則不然 登科而顯用者 未必皆有文翰之人矣 …

67) 『正祖實錄』 정조 7년(1763) 7월 12일 신축, 大司成閔鍾顯上疏曰 … 上命館閣·廟堂議 … 吏曹判書徐浩修議 … 而至於下齋生及四學儒生 則鄉曲經工之士 寄身赴舉之路 惟館學而已 一朝撤之, 必有抑鬱之歎 恐不如仍舊之爲便 …

68) 『大學成典』 卷三 殿講, 每年四盟朔十一日早朝 政院殿講取稟十五日正日 則十一日啓下 而政院捧甘結 掌吏進告堂上前 掌務官請坐 同日夕食堂以歲齒捧舉案 一 書某姓某年某生曾時讀某冊 着名 一 掌吏四學捧甘結居齋儒生各五人式 書姓名生年曾時讀着名 一如館儒 一 十二日三日間 單子書啓 … 一 生進五人 下齋一人 四學各一人 落點<或 生進四人 下齋二人落點>.

69) 정지연(2017)의 앞 글, pp. 112-113.

70) 『承政院日記』 영조 1년(1725) 2월 13일 신사, 今二月十三日巳時 上御進修堂 … 鎮遠曰 頃日宗臣殿講時 有儒生殿講冊子欲爲變通之教 而未及定奪矣 此事本非法典 小臣爲大司成時 陳達於肅廟有所變通 而卽今舉行之規 與臣本意相左 多有掣肘之端 今後 除四書 只以三經冊名 書入 落點於一經 而諸生皆講此經 則可無不均之歎 伏聞再明將行儒生殿講 故敢達 上曰 今番旣皆以周易落點

영되었고,⁷¹⁾ 영조대 일차전강과 도기전강은 이에 따라 운영되었다.

정조대 초반 춘·추도기 전강과 일차전강의 응시자들은 모두 『속대전』 법규대로 삼경 중 왕이 낙점한 일경을 응강해야 했다. 정조6년(1782) 4월의 일차전강부터는 사학 재임을 위주로 한 관·학 재임을 일차전강에 참여하게 하면서 이들은 삼경 중 자원일경(自願一經)을 응강하게 했다.⁷²⁾ 관·학 재임을 춘·추도기 전강에 응시하게 했을 때는 삼경 중 일경을 낙점하는 경우도 있었다.⁷³⁾ 재임이 아닌 관·학의 일반 유생은 일차전강과 춘·추도기 전강에서 여전히 삼경 중 왕이 낙점한 일경을 응강하다가, 일차전강의 일반 유생 응강 서적은 정조13년(1789)에 관·학 재임과 마찬가지로 자원일경으로 조정되었다.⁷⁴⁾ 그러나 춘·추도기 전강은 계속해서 삼경 중 왕이 낙점한 일경을 응강하는 방식으로 시행되었다.

춘·추도기 전강은 왕이 낙점한 일경을 응강하는 방식이었으므로, 해당 과시의 응시자들은 기본적으로 삼경의 강서 실력을 갖추어야 했다. 정조대 춘·추도기 전강의 낙점 경서의 기록이 남아있는 경우를 보면, 『시전』이 9번, 『서전』이 7번, 『주역』이 3번이다.⁷⁵⁾ 이러한 전강 경서는, 영조가 전강에서 식년시 문과 복시에서 배획(倍劃)을 받는 『주역』을 주로 낙점한 것과는,⁷⁶⁾ 다른 점이다.

정조는 춘·추도기 전강에서 최고 성적이 여러 명인 경우, 재위 초기 제술에 의한 비교를 시도한 이후로는,⁷⁷⁾ 일반적으로 다른 경서를 응강하게 하여 최우수 1명을 가

矣 自今以後 依所達定式 可也 此出舉行條.

71) 『續大典』 「禮典」 諸科, 【殿講】 … 【講書】 三經 <臨時稟旨> …

72) 정지연(2018b)의 앞 글, p.175.

73) 『日省錄』 정조 11년(1787) 1월 11일 경진, 親■春到記講製 … 試官率應講儒生行禮訖 以次呼名進講周易 齋任儒生講詩傳 …

74) 『正祖實錄』 정조 13년(1789) 11월 21일 계묘, 御春塘臺 行抄啓文臣宣傳官射講 正言俞漢寓啓言 … 又啓言 士者 國之元氣 太學者 賢士之所關 我殿下崇儒右文之化 於斯爲盛 而至於作育成就之方 反不如抄啓之勸課 則豈非聖世闕典乎 況於旬頭殿講之時 引入不讀之齋儒 以備循例之下性 殊欠誠實底道理 請預爲指揮於居齋儒生 使之從自願通習一經 與館學齋任 一例進講 以爲勸課責成之地焉 從之 …

75) 『承政院日記』, 『日省錄』 참고

『시전』-정조1.7.5., 2.11.12., 5.1.13., 6.8.24., 7.7.10., 10.8.6., 17.8.20., 19.8.2., 21.8.22.

『서전』-즉위8.26., 4.8.3., 5.8.3., 6.1.9., 7.1.24., 8.1.22., 12.8.26.

『주역』-정조3.1.10., 11.1.11., 12.1.10.

76) 정지연(2018a)의 앞 글. p.84.

77) 『承政院日記』 정조 1년(1777) 1월 4일 신미, 丁酉正月初四日辰時 上御崇政殿 儒生製講入侍時 … 敎曰 講生尹德性·李升運 俱純通 當以製述比較 卽爲懸題 講畢後 上曰 臺臣入侍 … 上曰 講經比較試券 持入考之 …; 정조 1년(1777) 7월 5일 무진, 丁酉七月初五日辰時 上詣崇政殿 親臨殿講製述入侍時 … 上曰 純通三人召入 使之比較 可也 上曰 讀券官一人進前 書題義翊進前 書箴題訖 對讀官南鶴聞 奉御題懸于懸題板 上曰 三人團坐 相議製呈 可也 … 比較三人呈券畢 上曰

《교육사학연구》 제28집 제2호(2018. 11.)

리곤 했다. 춘·추도기 전강의 비교 시험은 없는 경우도 있었지만 많을 때는 10차를 넘어가기도 했다. 정조10년(1784) 8월 6일 추도기 전강은 총 12차까지,⁷⁸⁾ 정조12년(1788) 1월 10일의 춘도기 전강은 총 14차까지 시행되었다.⁷⁹⁾ 전강의 비교는 진행될 때마다 경서가 바뀌었으므로, 전강의 응시자들은 삼경 뿐 아니라 사서(四書)의 강서 실력도 갖추어야 했다. 이 점에서 전강에 능한 이들은 강서 시험으로 입재(入齋)한 유학들일 수밖에 없었다.

춘·추도기 제술 시제(試題)는, 성균관의 다른 제술 과시와 마찬가지로, 대부분 어제(御製)로 정조가 직접 출제했다.⁸⁰⁾ 춘·추도기 제술 시제(試題)는 총 48번의 시행 기록이 모두 남아있는데 <표 3>과 같다.

<표 3> 정조대 춘·추도기 제술 시제(試題)

시제 종류	策	表	箋	賦	銘	詔	혼합(재위년.월.일)
시제 횟수	15*	18	6	4**	1***	1****	表/策 1(12.1.10.) 表/賦 1(14.9.8.) 策/詔 1(16.1.6.)

- * 정조6년(1782) 1월9일 춘도기 제술을 책(策)으로 하였으나, 난삽하여 11일에 다시 시험하면서 역시 책(策)으로 했다[1번으로 계산함].
- ** 정조18년(1794) 9월2일, 19년(1795) 1월24일, 8월2일, 20년(1796) 1월16일/정조20년 1월16일 춘도기는 반차가 혼란해 정지했다.
- *** 정조22년(1798) 3월12일 춘도기 제술 문제다.

- 試官入來考券 可也 諸試官以次進前考券訖 上曰 初以製述 使之比較 製呈之文 全不成樣 不可以此文定其立落 講則自是渠輩本色 當以講經 使之比較矣 比較冊子 不爲點下 使渠輩 自願爲之 三人皆願周易 ….
- 78) 『承政院日記』 정조 10년(1786) 8월 6일 병오, 丙午八月初六日卯時 上詣春塘臺 秋到記儒生製述殿講入侍時 … 二人比較至十二次 鄭璫得略性 敬鎮得純通性 …; 『日省錄』 정조 10년(1786) 8월 6일 병오, … 御春塘臺行秋到記儒生分製講 … 講以詩傳應講取粗以上十九人 命純通幼學鄭璫·車敬鎮以書傳比較俱純通 命以周易比較俱純通 命以大學比較俱純不 又命以中庸比較俱純通 又命以論語比較俱純通 又命以孟子比較 璫初不誤讀而試官李百亨錯出不性 故承旨請推從之 敬鎮講畢 百亨又爲錯出不性 命從重推考 仍命以孟子更爲比較俱純通 又命以詩傳比較俱純通 又命以中庸比較俱純通 又命以周易比較俱純通 又命以書傳比較俱純通 又命以論語比較 璫不敬鎮通 命史官使之進退召見講製入格儒生 ….
- 79) 『承政院日記』 정조 12년(1788) 1월 10일 계유, … 命書傳教曰 春到記殿講十四次幼學任埭 策問居首進士李晚秀 表居首生員金義淳 竝直赴殿試 …; 『日省錄』 정조 12년(1788) 1월 10일 계유, 行春到記分製講… 乘輿由青陽門入協陽門降輿御熙政堂 應講儒生以次進講任燒·金孝秀·鄭華錫 周易俱純通 命以詩傳比較 任燒金孝秀俱純通 又命以書傳比較 論語·孟子大學·中庸比較俱不 又命以大典通編·小學面講比較俱不 又命以製述比較以大中而上下應之曰大有爲贊題俱違 又命以周易·詩傳·書傳俱不 大學比較任燒以略居首 ….
- 80) 박현순(2013a)의 앞 글, p.65.

**** 정조23년(1799) 4월16일 춘도기 제술 성적 삼하(三下) 이상을 4월 17일에 갱시했으나 갱시 문제는 기록에 남아있지 않다.

정조는 춘·추도기 제술 문제로 주로 표(表)와 책(策)을 그 다음으로는 전(箋)을 내었고, 정조18년(1794) 경부터는 부(賦), 명(銘), 조(詔)를 내기도 했다. 책(策)·표(表)·전(箋)은 다른 문체에 비하여 변별력이 있는 것으로 여겨져서,⁸¹⁾ 정조는 춘·추도기 뿐만 아니라 다른 제술 과시에서도 해당 문체를 자주 이용했다.⁸²⁾

다만 표·전·책의 제술은 향유(鄕儒)에 비하여 경유(京儒)가 주력하고 능하였으므로,⁸³⁾ 성균관의 제술 과시나 문과 전시에서 이상의 시제(試題)가 주가 되는 경우 향유는 불리할 수밖에 있었다. 실제로 17세기 이래 문과 전시 시제는 과거 종류에 따라 표와 책을 출제하다가 숙종대에는 표가 주로 출제되었는데, 영조는 이에 대해 문제의식을 가지고 문과 전시에서 주로 부(賦)를 출제했다.⁸⁴⁾ 정조는 성균관의 제술 과시에서는 짓기 어려운 문체의 시제를 넘으로써 변별력을 높이고, 문과 전시에서는 재위 중반 이후부터는 상대적으로 짓기 쉬운 부(賦)를⁸⁵⁾ 넘으로써 향유를 포용하고

81) 『承政院日記』 숙종 2년(1676) 1월 24일 정미, 午時 上御經筵廳 將書講 … 積曰 非用情也 科場課試 僥倖之際 過眼易迷缺數字或屈 拙製或中 而四字文成篇 甚易 故納券者 亦甚衆 而混看尤易 誠難善擇矣 以故僥倖尤多矣. 表亦不無僥倖 而不至於四字之甚 多士衆會之日 不可以箴·銘·頌出試矣; 영조 46년(1770) 2월 20일 정묘, 同日二更二點 上御集慶堂 … 命書之曰 大抵昔年則崇尚表箋 其文蔚興 近者爲鄕儒 以賦皆取 於表以頃年觀之 可謂寒心 故文臣製述 翰林召試 皆以表題 今則雖勝於其時 奚比於盛時 …; 정조 즉위년(1776) 8월 27일 병인, 丙申八月二十七日午時 上御尊賢閣 … 此後試士 皆以策問 則似可得實才矣 皆對曰 策問實非不文之士所可能也 連試表策 間或以論 則其於作成之方 似有彬蔚之美矣 肅廟朝 全以表策試士 其時士子 多有能文之人矣 上曰 先王朝 全以賦取士 雖多倖科 而在士子 實爲沒世不忘之德矣 若不以賦試取 則不文之士 其何得科名耶 皆對曰 然矣 ….

82) 박현순(2013a)의 앞 글, p.59.

83) 『肅宗實錄』 숙종 7년(1681) 1월 3일 정사, 引見大臣 備局堂上 … 李端夏言 式年講規 不問文義 只取能通音釋 講畫過多 而雖善製述者 不得以生畫得捷 故不赴東堂 以此 鄕儒專事口讀 而不解文義 京儒只事表策 而不知經學 科舉 取人初程 而踈謬如此 …; 『承政院日記』 영조 15년(1739) 4월 28일 갑진, 己未四月二十八日午時 上御熙政堂 … 三年大比 三十三人 常多鄕儒 增別試, 京鄕參半 而箴銘頌 則鄕人尤不得爲之矣 近來箴銘頌賦表策迭出 故儒生輩 不知當作何文 尤不爲工夫 此非勸獎之道 先朝初年 亦出箴銘頌題 而故相臣金錫胄·南九萬陳達 專用四六矣 上曰 近來皆表矣 淳曰 聖意知表之難 故如此矣 策問救弊 可知誠敬 而四六文字 必用經史 表尤難矣 上曰 果然難矣 惟其專用四六 故京儒皆做表矣 淳曰 箴銘頌 其題不過四五百 易於逢題 有在鄕者 聞某人登科 以爲必逢箴銘 果然云矣 上曰 咸聚京師 有意出賦 則京儒裹袂 揭表則鄕士不參 予嘗聞儒生稱冤之說 故時出此等題矣; 영조 47년(1771) 10월 28일 을미, 辛卯十月二十八日辰時 上御崇政殿殿庭 … 上命新恩進前 各奏姓名及所製 以次進告 … 上曰 鄕儒則作表似難 作賦 易矣 ….

84) 박현순(2013a)의 앞 글, p.53.

85) 『承政院日記』 정조 1년(1777) 1월 3일 경오, 丁酉正月初三日午時 上御興政堂 … 上曰 明日科次製述當先 畢於講經乎 命善曰 若出長文 則未能預度 而不然則製述當先之矣 上曰 表賦難易 何如 命善曰 表難於賦矣 上命退 諸臣退出; 헌종 14년(1848) 3월 26일 경자, 戊申三月二十六日酉時 上

자 했다.⁸⁶⁾

정조대 춘·추도기 제술은 통상 비교가 없었지만, 시험장이 혼란하거나⁸⁷⁾ 유생들이 지어낸 글이 좋지 못할 때,⁸⁸⁾ 은사자를 엄선하고자 할 때⁸⁹⁾ 갱시(更試)나 삼시(三試)를 시행했다. 정조대 춘·추도기 제술과 전강은, 황감제와 더불어 통상 최우수자에게 직부전시의 은사를 내리는 과시였던 만큼, 이들 과시의 최우수자의 선발은 특히 엄중을 기하였음을 알 수 있다.

4) 은사

『대전통편』의 춘·추도기 은사 규정은, 친림으로 시행하는 명관에 의해 시행하던 전강과 제술에서 각각 1명씩 직부전시를 내린다고 되어 있다. 순조대부터는 춘·추도기를 명관이 실행하는 경우가 나타나지만,⁹⁰⁾ 정조는 모든 춘·추도기에 친림했다. 정조대 절일제는 친림이나 대운차로 시행하는 경우에만 직부전시의 은사가 내려졌던 것을 감안하면,⁹¹⁾ 정조가 모든 춘·추도기에 친림한 것은 그만큼 춘·추도기를 중시했

御誠正閣 春到記科次入侍時 … 上曰 製表 難於賦乎 斗淳曰 表之工程 似爲難矣 上曰 表則決科後 亦多有用處 而賦則雖謂之無用 可也 斗淳曰 然矣 …

86) 박현순(2013a)의 앞 글, p.61.

87) 『正祖實錄』 정조 6년(1782) 1월 10일 정미, 丁未 御春塘臺 科次到記儒生試券 比較試講儒生 教曰 昨日試場 士習解弛 嚴科場三字 御極以後 未嘗放過 未幾生弊至此 烏可無警勸之舉 挾冊及借述儒生 特從申令 雖不處分 既曰科場不嚴 則在士子廉隅 雖被選 必不爲快 面試不行 實有所執 而優取六七人 更試功令 實合待多士嚴科場之意 被抄儒生 皆令明日應試 …

88) 『承政院日記』 정조 16년(1792) 7월 19일 병진, 壬子七月十九日申時 上御誠正閣 科次入侍時 … 今日諸券之草草 甚於七日 此所以付之諸考官 只取稍可意者也 見其所選置一券 高等且無論 次上等亦未免苟且 七製則猶以赴會試 雖不得不特加假借 按例論賞 至於到記 則係是賜第之科 決不當以此 置之高等 記昔先朝泮試策問也 更試至三試 而始賜第 正爲今日仰述之端 明日當更試策題 以定高下 令泮長知悉 …

89) 『正祖實錄』 정조 23년(1799) 3월 28일 병술, 敎曰 攷之國朝故事 文臣參下乏人 則例設春塘臺試取, 武臣宣傳官乏人 則亦設春塘臺 以儒生對舉 近日因文臣之乏人 而行且陞遷 設科取人 古例可遵 而時值農節 秋亦當行謁聖 先就應設之試 合有拔尤之政 依先朝圓點儒生試取時先製後講之已例 到記製述則先取幾人 更試出榜 日次殿講則製講從願先取幾人 更試出榜 三製則通方外臨殿 備七試官試取 亦令諸生知悉; 『承政院日記』 정조 23년(1799) 4월 17일 을사, 己未四月十七日辰時 上御便殿 … 命書傳教曰 春到記殿講居首幼學鄭度采 製述更試居首生員趙晉和 竝直赴殿試 講之次通幼學金載明 製述更試之次幼學申綱 竝直赴會試 …

90) 『承政院日記』 순조 2년(1802) 9월 20일 무자, 傳于李肇源曰 秋到記明日爲之 處所以成均館爲之以釋菜參班人試取 講則仁政殿命官爲之 壬戌九月二十日申時 上御熙政堂 … 履永曰 明日秋到記, 既命設行於成均館, 則當出命官爲之 而試券收取以來 入侍科次等節 亦當依例舉行乎 上曰, 依此爲之. …; 순조 13년(1813) 9월 15일 무인, 南惠寬啓曰 明日仁政殿秋到記儒生製述時 命官爲之事 命下矣 何大臣進去乎 敢稟 傳曰 領議政進去 南惠寬啓曰 明日仁政殿秋到記儒生殿講時 命官爲之事 命下矣 何大臣進去乎 敢稟 傳曰 左議政進去.

음을 보여준다.

춘·추도기 진강과 제술의 은사는 각각 직부전시 이하로, 직부회시, 급2분, 급1분과 경서나 법전, 지필묵 등을 내리는 사물(賜物)이 있었다. 정조대에 한정되어 나타나는 성균관 과시의 은사로는 급반분(給半分), 직부정시회시의 은사가 있다. 춘·추도기에서는 정조17년(1793) 2월의 춘도기 제술에서, 1등인 진사 최광태(崔光泰, 1744-?)가 이전의 다른 제술 과시에서 직부정시회시의 은사를 받았으므로 당일의 춘도기 제술은 꺾방(闕榜)과 다름없다고 하면서, 특별으로 2등인 진사 강준흠(姜浚欽, 1768-?)에게 직부정시회시의 은사를 내렸다.⁹²⁾

직부정시회시는, 급분 이상의 다른 은사는 모두 초시가 있는 문과 즉 식년시·증광시·별시 및 초시를 실시하는 정시(庭試)에 사용할 수 있었던 반면,⁹³⁾ 오롯이 정시회시(庭試會試)에만 사용할 수 있는 은사였다. 그러나 직부정시회시는, 정조의 꺾방과 같다는 언급과 정시회시가 정시전시(庭試殿試)와 겸하여 치러진다는 점을 볼 때,⁹⁴⁾ 실제로는 직부정시전시에 해당하는 은사였던 것 같다. 정조대 직부정시회시의 은사는 정조16(1792)-18년(1794)동안 4명에게 내려지는데, 정시 설행 전 사망한 것으로 보이는 1명과⁹⁵⁾ 직부정시회시보다 상급인 직부전시의 은사를 받은 1명-최광태-를 제외한 다른 2명은 모두 정시회시에 직부되어 급제했다.⁹⁶⁾ 이들 2명의 은사는 정

91) 『承政院日記』 정조 13년(1789) 2월 26일 계축, 己酉二月二十六日卯時 上御春塘臺 … 命書傳教曰 鄉儒之多造 未有多於今番 而參榜者只是高陽鄉儒一人 既與闕榜有異 後庭試雖無可論 三製隔日 大比在即 趁今上京 許其觀光 日子進定 已例亦多 三日製進定於明日 除非大輪次及親臨 則節製 例不得賜第 明日當於春塘臺親臨 試紙用大好紙事 令入場諸生 先爲知悉 …

92) 『正祖實錄』 정조 17년(1793) 2월 9일 임신, 壬申 御仁政殿 親試到記儒生製述 還御熙政堂 行抄啓文臣親試·文臣製述·專經文武臣殿講·到記儒生·館學齋任殿講·釋菜參班儒生應製 到記製述居首進士崔光泰 講居首幼學尹致永等 直赴殿試 第二姜浚欽赴庭試會試 光泰 曾以應製優等 有直赴庭試會試之命 而又赴到記居魁,上詢于諸試官 諸臣皆言 更當賜第 從之 復以光泰 既已再中 今日試取 無異闕榜 特命第二人 直赴庭試會試.

93) 『續大典』 「禮典」 諸科, 庭試殿試 凡恩賜直赴者 許赴 <庭試親臨即日唱榜 則依謁聖·春塘臺例 不得許赴>; 『大典通編』 「禮典」, 諸科, 製述·講經直赴會試及給分人 勿論增·式年·別試從願許赴.

94) 『承政院日記』 정조 1년(1777) 10월 19일 신해, 鄭民始 以禮曹言啓曰 卽接四館所牒報 … 今此庭試殿試 既兼會試 金天欽等三人 依例許赴 而凡直赴殿試人 雖未入格 三次考試事 既有定式 李萬榮等四人 一體許赴 使之更試 何如 傳曰 允; 정조 2년(1778) 7월 28일 을묘, 申應顯 以禮曹言啓曰 卽接四館所牒報, … 其中直赴會試四人 今此庭試殿試 既兼會試 與原榜初試人 一體許赴 給分四人 許赴初試 何如 傳曰 允.

95) 『承政院日記』 정조 16년(1792) 9월 10일 병오, 傳于李家煥曰 水原邑內儒生應製 去六月朔 賦二下一生員李延泰直赴庭試會試 三下幼學趙萬元 直赴式年監試會試 …; 생원 이연태가 생존해 있었다면 강준흠과 함께 정조18년(1794) 2월 말에 예조가 보고하는 은사자 명단에 있었을 것이다.

96) 『朝鮮文科榜目』 【甲寅庭試榜】 (정조18년, 1794)二月二十八日 親臨春塘臺 慈殿恰躋五旬慈宮恰躋

시 시행 전후 예조의 은사자 관련 보고에서도, 직부전시자 다음 및 직부회시자 앞에 보고되며, 직부전시자와 함께 언급된다.⁹⁷⁾

춘·추도기의 직부전시 은사를 전강과 제술 각각 1명으로 제한하는 기조는 정조대 내내 유지되었다. 정조는 춘·추도기 전강에서 유생들의 성적이 낮거나 제술 시험장이 혼란할 때는 은사의 등급을 낮추었다.⁹⁸⁾ 간혹 유생들의 실력이 출중하거나⁹⁹⁾ 제술의 시제(試題)가 2개일 때는¹⁰⁰⁾ 2-3명에게 직부전시의 은사를 내리기도 하였지만, 이것은 드문 경우였다.

정조대 춘·추도기 은사자 중 그 직분과 은사의 등급이 비교적 정확하게 언급되는 직부전시부터 급1분까지의 은사자들을, 시험 방식 및 직분, 은사 등급별로 구분하여 정리하면 <표 4>와 같다.

-
- 六旬 合二慶庭試文科殿試榜 … 丙科 三十九 姜浚欽 …; 【乙卯庭試榜】(정조19년, 1795)九月初四日 親臨春塘臺 桓祖大王懿惠王后追躋永興本宮殿下即阼二十年慈殿寶齡望六加上尊號景慕宮追上尊號慈宮寶齡周甲加上尊號合六慶 慶科大庭試文科殿試榜 … 丙科 十八 鄭澣 ….
- 97) 『承政院日記』 정조 18년(1794) 3월 1일 무자, 洪仁浩, 以禮曹言啓曰 卽接四館所所報 … 則壬子四月初五日慶尙道道科入格幼學姜世白 生員金熙洛 … 癸丑二月初八日春到記製述入格進士姜浚欽 直赴庭試會試 有故未及赴壬子殿試人進士任希存 甲寅二月二十一日三日製入格幼學金就強並直赴殿試 … 庚戌九月三十日親臨食堂製述入格幼學黃基天·申夔朝·杜萬馨 … 並直赴會試 …; 정조 19년(1795) 9월 15일 계해, 李晚秀 以禮曹言啓曰 試考恩賜儒生直赴帖 過科後 令成均館收聚以來 爰周後 草記事 曾已定式矣 卽接成均館所報 則今番合六慶慶科庭試會試時 直赴殿試儒生 進士魏光肇 … 直赴庭試會試儒生 生員鄭澣 直赴會試儒生 ….
- 98) 정조2년(1778) 2월18일 춘도기 전강에서는 사물의 은사만 내렸으며, 정조20년(1796) 1월 16일의 춘도기 제술은 시험장이 혼란하여 정지시키고 일절 은사가 없었으며, 12월 15일 황감제 겸 추도기의 전강에서는 직부회시부터 은사가 있었다.
- 99) 정조10년(1786) 8월 6일 추도기 전강은 총 12차의 시험이 진행되어 거수와 지차에게, 17년(1793) 8월 20일 추도기 제술-시제(試題) 전(箋)-에서 2명에게, 24년(1800) 3월28일 춘도기 제술-시제 전-에서는 3명에게 직부전시를 내렸다.
- 100) 정조 12년(1788) 1월 10일 춘도기 제술의 책(策)과 표(表) 각각의 최우수자, 14년(1790) 9월 8일 추도기 제술의 책과 부(賦) 최우수자, 16년(1792) 1월 16일 인일제 겸 춘도기의 제술의 책(策)과 조(詔)의 최우수자에게 각각 직부전시를 내렸다.

<표 4> 정조대 춘·추도기 은사자 수 및 직분*

은사 등급 시험방식 및 직분		직부전시		직부회시		급2분		급1분		총합	
										직분(%)	시험방식(%)
전강	생원	2	46	3	68	0	54	1	54	6(2.7)	222(52.2)
	진사	1		2		1		1		5(2.3)	
	유학	43		63		53		52		211(95.0)	
제술	생원	26	52	21	54	27	48	18	49	92(45.6)	203(47.8)
	진사	23**		26		19		27		95(47.0)	
	유학	3		7		2		4		16(7.4)	
총합(%)		98(23.1)		122(28.7)		102(24.0)		103(24.2)		425	

* 중복하여 은사를 받은 이들을 포함한 수이다.

** 정조17년(1793) 2월9일 춘도기제술의 2등 진사 강준흠(姜俊欽, 1768-?)의 직부정회시의 은사는 직부전시로 산출했다.

정조대 총 48회 시행된 춘·추도기의 직부전시자는 98명으로, 통상 전강과 제술에서 각각1명 정도의 직부전시자가 배출되었음을 알 수 있다. 전강과 제술을 합한 은사자 중에서는 직부전시자 수가 가장 적었고, 그 다음으로 급1분자와 급2분자 수가 비슷하였으며, 직부회시자가 수가 가장 많았다. 전강의 은사자 수 분포는 전체의 그것과 비슷하지만, 제술의 은사자 수 분포 양상은 다소 다르다. 제술의 은사자 수는, 전강과 마찬가지로 직부회시자 수가 가장 많았지만, 그 다음으로 많은 것은 직부전시자 수였다. 즉 제술은 직부전시자 수가 전강에 비하여 많은 편인데, 이것은 2개의 시제를 내거나 문제가 어려울 경우 2-3명의 직부전시를 내린 것과 관련이 있다. 직부전시자 수는 제술이 많았지만, 나머지 은사의 은사자 수는 모두 전강이 많았던 까닭에, 전체 은사자 수는 제술보다 전강이 많았다.

<표 4>에서 확연히 드러나는 것은, 직분에 따라 능한 과시가 달랐다는 점이다. 정조대 춘·추도기의 은사자 직분은, 전강은 생원·진사 5%, 유학 95%, 제술은 생원·진사92.6%, 유학 7.4%으로, 숙종대 성균관 과시의 은사자 중 전강은 유학 51.3%, 생원 23.9%, 진사는 24.8%였고, 제술은 유학 27.4%, 생원 27.9%, 진사 37.9%였던 것에 비해서,¹⁰¹⁾ 극명하게 유학은 전강에, 생원·진사는 제술에 능한 면모를 보였다. 유학

101) 이상무(2015), 「인조-숙종대 별시 운영과 성균관 교육 연구」, 서울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p.175.

《교육사학연구》 제28집 제2호(2018. 11.)

이 전장에 능한 것은, 관·학의 유학 40명은 강서로 선발된 이들이었으므로, 당연한 결과다. 소과(小科)에 합격한 생원·진사가 춘·추도기 제술에서 유학보다 능한 것 역시 마찬가지다. 생원과 진사의 직분은 다른 종류의 제술 시험을 통해 얻게 되는 것이었지만, 표·전·책의 제술 능력 차이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경향에서 비껴가는, 즉 춘·추도기 제술에서 은사를 받은 유학과 춘·추도기 전장에서 은사를 받은 생원·진사의 거주지를 분석해보면 다소 특이한 점이 나타난다. 이들의 거주지를 한성, 근기지역(경기도+충청도), 그 외 지역을 구분하여 정리하면 <표 5>와 같다.

<표 5> 정조대 춘·추도기 은사자 중 전장-생원·진사 제술-유학 거주지역

『조선문과방목』 『사마방목』 참고

거주지 시험방식 및 직분	한성	근기지역	그 외 지역	기록없음	총합
전장 생원·진사	4 (직부회시 3/ 급1분 1)	1 (직부회시, 경기도 포천)	4* (직부전시 3/ 급1분 1)	1** (직부회시)	10***
제술 유학	8 (직부전시 3/ 직부회시 1/ 급2분 2/ 급1분 2)	1 (직부회시, 충남 아산)	1 (직부회시, 평안도 평양)	5 (직부회시 4, 급1분 1)	15****

* 그 외 지역 출신인 전장 은사자 생원·진사의 거주지는 다음과 같다. [직부전시자] 정조18년(1794) 9월2일 추도기전장 생원 박정검(朴廷儉, 1765-?) 경남 고성, 정조19년(1795) 8월2일 추도기전장 진사 민영유(閔令儒, 1764-1840) 및 정조23년(1799) 9월24일 추도기전장 생원 민철유(閔哲儒, 1757-1823) 전남 나주/[급1분자] 정조12년(1786) 8월26일 추도기전장 생원 권취도(1749-?) 경북 안동

** 정조19년 8월2일 추도기제술에서 직부회시를 받은 생원 임중진(林重鎭)은 『사마방목』에 기록이 없다.

*** 진사 민영유는 정조18년(1794) 9월2일 추도기전장에서 직부회시를 받은 후 정조19년(1795) 8월2일 추도기전장에서 직부전시를 받았다.

**** 유학 심반(沈鑿, 1757-?)은, 정조12년(1788) 1월10일 춘도기제술에서 급1분을 받은 후 정조15년(1791) 2월2일 춘도기제술에서 직부전시를 받았다.

<표 5>를 보면 춘·추도기 전장에서 은사를 받은 생원·진사의 거주 지역은 한성 및 근기 지역과 그 외 지역이 고르게 나타나는 반면, 제술에서 은사를 받은 유학의 거주 지역은 한성 및 근기 지역이 우세함을 알 수 있다. 춘·추도기 제술에서 은사를

받은 유학의 한성 및 근기 지역 편중에서, 경유가 향유에 비하여 제술에 능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전강 우수 생원·진사의 거주 지역은 한성 및 근기지역과 그 외 지역의 분포가 비슷하므로, 제술에 비하여 전강의 지역적 편차는 크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직부전시자 3명의 거주 지역이 모두 그 외 지역이라는, 제술만큼의 지역적 편차가 전강에서 나타나지는 않더라도, 경유에 비하여 향유가 전강에 능하였음을 보여준다.

III. 결론

본고는 정조대 춘·추도기 운영 법규와 규정, 운영 과정을 검토함으로써 춘·추도기 운영의 특징을 파악하고자 했다. 검토의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춘·추도기는 정조즉위년에 시작된 성균관 과시로, 전강과 제술을 봄과 가을의 어느 날에 동시에 설행하고 유생들이 자원에 따라 선택하여 응시하게 했다. 춘도기는 대개 1-2월에, 추도기는 대개 7-8월에 시행하였지만, 해당 년도의 상황에 따라 드물게 각각 3-4월이나 9, 11, 12월에 시행하는 경우도 있었다.

춘·추도기는 1-2일 전에 시행을 명하면서, 명령일 당일의 석식당 도기나 다음날의 조식당 도기를 가져오게 하는 방식으로 도기 수취를 예고하곤 했다. 명령일 이전의 도기를 수취하는 경우는 석채도기를 활용하기도 했다. 정조대 후반에 가면 장기간의 식당 도기를 가져오게 하여, 성균관에 거재하고 생원·진사보다 많은 생원·진사가 춘·추도기에 응시할 수 있게 했다.

춘·추도기 전강과 제술의 시관은 문과 전시의 시관 규정에 따라 각각 7명의 시관을 임명했다. 춘·추도기의 기본 응시자는 성균관 거재 생원·진사 100명과 재임 6명 중 도기명부에 이름이 있는 이들과, 성균관 하재 및 사학(四學)의 유학 40명이었고, 정조6년(1782)부터는 사학재임도 응시하게 했다. 춘·추도기의 응시자 수는, 장기간의 도기를 수취하거나, 성균관 생원·진사 식당 인원 수 제한이 없는 석채, 절일제 및 황감제, 과거(科擧) 시기에 시행하거나, 석채도기를 활용하는 경우, 생원·진사 수의 증가로 응시자가 수백 명 이상으로 늘기도 했다.

춘·추도기의 전강 경서는 삼경 중 왕이 낙점한 일경이었다. 정조는 삼경 중 『시전』과 『서전』을 주로 낙점했다. 전강은 최고 성적이 여러 명인 경우, 다른 경서를 응

강하게 하여 최우수자 1명을 가렸으므로, 전강에 응시하는 유생은 삼경 뿐 아니라 다른 경서의 전강에도 능해야 했다. 춘·추도기의 제술에서는 일반적으로 비교가 없었으며, 시제는 어제(御題)로 주로 표(表)·책(策)·전(箋)이 출제되었다. 이 문체들은 다른 문체에 비하여 변별력이 있는 것으로 여겨져서, 성균관 과시의 제술 시제로 주로 사용되었다. 표·책·전의 제술에는 향유에 비하여 경유가 능했으므로, 문과 전시에서는 상대적으로 짓기 쉬운 부(賦)를 내는 방식으로 향유를 포용하고자 했다.

춘·추도기의 최고은사는 전강과 제술 각각 1명에게 직부전시를 내리는 것이 법규로, 정조대 내내 이 기조는 유지되었다. 직부전시자 수는 제술이 전강보다 많았지만, 그 이하의 은사자 수는 전강이 제술보다 많았으므로, 전체 은사자 수 역시 전강이 제술보다 많았다. 전강과 제술의 은사사 구성에서는 직분에 따른 차이가 두드러졌다. 춘·추도기에서 생원·진사는 제술에, 유학은 전강에 능한 면모를 보였다. 영조대 이래 관·학의 유학은 강서 시험을 통해 입재하는 이들이었고, 생원·진사는 소과의 제술 시험을 이미 거친 이들이므로 이들의 분기는 당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전강 및 제술 은사자들의 거주 지역과 관련해서는, 경유(京儒)와 향유(鄉儒)의 분기도 나타났다. 정조는 이러한 직분 및 거주 지역에 따른 분기를, 춘·추도기를 통해서 조정하려고 하지는 않았으며, 재위 내내 춘·추도기를 전강과 제술 각각에 능한 유생을 선발하는 과시로 활용했다.

정조대 춘·추도기 운영은, 정조즉위년 첫 시행을 근간으로 하여 이루어졌다. 1-2 일 전의 시행일 및 도기 수취 고지, 전강과 제술의 별도의 시관 및 자원에 따른 응시, 삼경 중 일경의 낙점 및 제술 문제의 어제(御題), 전강과 제술에서 각각 직부전시 1명 이하의 은사는 모두 처음 시행된 정조즉위년(1776) 8월의 추도기 운영절차와 비슷한 것이다. 춘·추도기의 응시자 수는 후대로 갈수록 증가했는데, 응시자에 사학 재임을 추가하고, 도기 수취를 예고하고, 거재하지 않는 다수의 생원·진사에게 식당에 참여할 기회를 준 것에서 비롯한 것이었다. 늘어난 응시자들 대부분은 춘·추도기 제술에 참여했다.

정조대 춘·추도기의 운영에서 나타나는 응시자의 확대와 은사자의 분기는, 성균관의 다른 과시 운영과 비교를 필요로 하는 부분이다. 이러한 경향성이 과연 춘·추도기만의 특징이었는지 아니면 전체 성균관 과시의 특징이었던지는, 성균관의 다른 과시 운영 연구와 비교를 통해서 판단할 수 있다. 정조대 다른 성균관 과시에서도 응시자들의 확대정책이 시행되는지, 은사자들의 직분 및 지역에 따른 분기가 나타나

는지, 나아가 개별 과시 정책 간에 충돌되는 점은 없었는지, 전체 성균관 과시 운영에서 개별 과시 정책은 어떻게 조율되고 연계되었는지 등에 대한 연구는 추후 과제로 남긴다.

참고문헌

- 『經國大典』, 『大典通編』, 『大典會通』, 『司馬榜目』, 『續大典』, 『承政院日記』, 『銀臺便攷』, 『日省錄』, 『朝鮮文科榜目』, 『朝鮮王朝實錄』, 『太學成典』, 『太學志』
- 박현순(2013a), 「正祖代 科擧制 운영의 정비」, 『한국문화』 62,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 _____ (2013b), 「영조대 到記儒生殿講에 관한 고찰」, 『한국문화』 64,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 윤기 저, 이민홍 역주(1999), 『조선조 성균관의 교원과 태학생의 생활상(완역 泮中雜詠)』,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 이상무(2015), 「인조-숙종대 별시 운영과 성균관 교육 연구」, 서울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정지연(2017), 「숙종대 성균관 과시 운영 연구」, 『교육사상연구』 31권 3호, 한국교육사상연구회.
- _____ (2018a), 「숙종-정조대 성균관 과시(課試) 운영 연구」, 서울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_____ (2018b), 「정조대 일차유생전강 운영 규정 변화 연구」, 『한국교육사학』 40권 3호, 한국교육사학회.
- 최광만(2015), 「정조 대의 성균관 과시 정책」, 『한국교육사학』 37권 4호, 한국교육사학회.
- _____ (2018), 「조선 후기 과시 규정의 변화」, 『교육사학연구』 28집 1호, 교육사학회.

<Abstract>

A study on the operation of ChunChuDogi(春·秋到記)
during King Jeongjo's reign(1776-1800)

Cheong, Jiyeon
(Seoul Nangok Elementary School)

This study focuses on revealing the characteristics of the operation of ChunChuDogi(春·秋到記) during King Jeongjo's reign(1776-1800) by examining the rules and the procedures.

ChunChuDogi was one of SeonggyungwanGuasi(成均館課試), which was organized and conducted after King Jeongjo ascended. It consisted of the oral test of Confucian Classics and the written test of literary style. It was administered biannually; one day during the spring and autumn. One or two days before ChunChuDogi would be administered, King Jeongjo would order the cafeteria list(Dogi, 到記) brought to him from Seonggyungwan(成均館).

Seven examiners oversaw the oral test and seven different examiners oversaw the written test. The Basic examinees were Saengwon·Jinsa and Yuhak(幼學) in Seonggyungwan and Yuhak in its four-affiliated schools(四學). The representatives of its four-affiliated schools as well as the representatives of Seonggyungwan could take ChunChuDogi during the sixth year of King Jeongjo's reign(1782).

The book for the oral test was one of three Confucian Classics(三經) chosen by the King. King Jeongjo often selected 『the Book of Odes(詩經)』 and 『the book of Documents(書經)』. For the written test, King Jeongjo often personally set the question. The questions were mainly Pyo(表)·Chaek(策)·Jeon(箋) which were determined to be the most effective at selecting individuals who would be best able to serve the country.

《교육사학연구》 제28집 제2호(2018. 11.)

The written test produced the highest number of top scoring students who were able to claim the best benefits(直赴殿試). But, in contrast, the oral test produced the most students in total who were able to claim benefits of any kind. During King Jeongjo's reign, Saengwon·Jinsa were good at the written test while Yuhak were good at the oral test. This was due to their duties.

King Jeongjo did not make adjustments to ChunChuDogi to address this issue. King Jeonjo focused on using ChunChuDogi to find talented individuals who were good at the oral test and the written test.

Key words : ChunChuDogi(春·秋到記), Dogij-jeon'gang(到記殿講), Dogi-jesul(到記製述), Guasi(課試), King Jeongjo(正祖)

§ 논문 투고 : 2018. 10. 22.

§ 심사 시작 : 2018. 11. 05.

§ 게재 결정 : 2018. 11. 16.